

www.kipf.re.kr

세법연구 25-01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2025. 9.

홍병진·송은주·노수경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병 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노 수 경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현황	6
1. 금융소득의 범위	6
2. 금융소득 과세제도	12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1
4. 금융소득 신고 및 ISA계좌 가입 현황	26
가. 원천징수	26
나. 종합과세	29
다. ISA계좌 가입·운용 현황	36
III.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39
1. 미국	39
가. 금융소득의 범위	3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44
2. 일본	48
가. 금융소득의 범위	4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50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8

3. 영국	67
가. 금융소득의 범위	6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68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72
4. 독일	81
가. 금융소득의 범위	81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83
5. 프랑스	87
가. 금융소득의 범위	8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89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93
IV. 국제비교	99
1. 금융소득 과세체계	99
가. 이자소득 과세제도	99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103
다. 이중과세 조정제도	107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09
가. 계좌유형	110
나. 가입요건	112
다. 복수계좌 허용 여부	113
라. 의무기간	113
마. 세제혜택	114
V. 시사점 및 결론	116
1. 금융소득 과세제도	116
가. 단기적 개선방안	116

나. 장기적 개선방안	12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24
가. 가입요건	125
나. 세제혜택	126
다. 운영방식	128
참고문헌	130

표 목차

〈표 II-1〉 한국: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종류	6
〈표 II-2〉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년)	12
〈표 II-3〉 한국: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3
〈표 II-4〉 한국: 소득구분별 원천징수세율	15
〈표 II-5〉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주요 변천 내용	16
〈표 II-6〉 한국: 비교과세 방법	21
〈표 II-7〉 한국: ISA제도 주요 변천 내용	23
〈표 II-8〉 한국: ISA 세제지원 확대안(2024. 1.)	25
〈표 II-9〉 한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27
〈표 II-10〉 한국: 이자소득 10분위별 소득금액, 소득세액 비율	28
〈표 II-11〉 한국: 배당소득 10분위별 소득금액, 소득세액 비율	29
〈표 II-12〉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	30
〈표 II-13〉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소득	31
〈표 II-14〉 한국: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구성비	33
〈표 II-15〉 한국: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 구성비	35
〈표 II-16〉 한국: ISA 유형별 현황(계좌 수, 투자금액)	36
〈표 II-17〉 한국: ISA 운용(편입자산) 현황 총괄(2025년 6월 30일 기준)	38
〈표 III-1〉 미국: 소득세 세율	45
〈표 III-2〉 미국: 장기자본이득 세율(2025년)	47
〈표 III-3〉 일본: 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요	53

〈표 III-4〉 일본: 종합소득세 세율	55
〈표 III-5〉 일본: 배당공제제도의 공제율	57
〈표 III-6〉 일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요	57
〈표 III-7〉 일본: NISA제도 유형별 제도 개요	63
〈표 III-8〉 일본: NISA계좌 수와 매입액 현황	65
〈표 III-9〉 일본: 신NISA 유형별 매입액	66
〈표 III-10〉 일본: 주니어NISA 이용 현황	66
〈표 III-11〉 영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26년)	69
〈표 III-12〉 영국: ISA 유형별 혜택 및 특징	73
〈표 III-13〉 영국: ISA 추이(2008/09년~2022/23년)	79
〈표 III-14〉 독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년)	85
〈표 III-15〉 프랑스: 소득세율(2024년)	91
〈표 III-16〉 프랑스: 이자·배당 과세제도의 PFU 제도 도입 전후 비교	93
〈표 III-17〉 프랑스: PEA, PEA-PME 계좌 현황(연도 말 기준)	97
〈표 IV-1〉 주요국의 이자소득 과세제도	102
〈표 IV-2〉 주요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106
〈표 IV-3〉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108
〈표 IV-4〉 주요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 비교	112
〈표 IV-5〉 주요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성인대상) 비교	115

그림 목차

[그림 II-1] 한국: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 개요	19
[그림 II-2] 한국: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 체계	20
[그림 III-1] 일본: NISA계좌 수와 매입액 추이	65
[그림 III-2] 영국: ISA 유형별 개설계좌 수 비율	76
[그림 III-3] 영국: ISA 유형별 계좌납입금액 비율	77
[그림 III-4] 프랑스: PEA 보유증권잔액 추이	98
[그림 III-5] 프랑스: PEA-PME 보유증권잔액 추이	98

I. 서론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임¹⁾
 -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199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²⁾ 부부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관행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³⁾
 - 현행 「소득세법」상 6가지의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이자와 배당을 금융소득으로 구분함⁴⁾
 -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재산 형성과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⁵⁾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신뢰 강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투자활성화와 과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금융소득 세제의 선진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금융소득 세제를 검토하여 투자를 저해

1) 이한솔 외(2025), p. 11.

2)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3) 오윤·임동원(2013), p. 65.

4) 소득유형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소득으로 구분함

5)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 및 계층 간 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음⁶⁾

- 1996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하고 그 이하의 경우 20%이던 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도입되었음⁷⁾
- 1997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분리과세가 다시 도입되었고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환원되었음
- 2001년 다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원천징수세율도 15%로 조정되었다가 2004년에 14%로 하향 조정되었음
-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2002년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4천만원으로 개정되었고, 2013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인별 2천만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최근 금리 상승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현황을 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최근 2~3년 사이 급증하여 2019년 15만명에서 2023년 33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6) 오윤·임동원(2013), pp. 65~66.

7)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과 같은 일부 당연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를 유지했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고금리 금융상품 및 주식 투자자의 증가 등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10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한 것도 하나의 요인임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수직적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대상자가 증가함으로써 중산층까지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대부분 장기투자로서 자본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배당소득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최근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임
 -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법인을 말함
 - 세율은 현금배당액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 제시된 정부안은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분리과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대상이 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최고세율이 45% (현재)에서 35%(개정안)로 인하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기업의 추가적인 배당 지급 유인이 적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2016년에 도입한 ISA제도는 절세를 통한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한 것이었으나 가입자 절반이 예·적금 위주로 운영하여 절세효과가 크지 않았고, 신규가입자 수도 미비한 상황에서⁸⁾ 2021년에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를 출시하였으나 여전히 예·적금 비중이 41%(2025. 6.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ISA는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낮은 세제혜택과 복잡한 제도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제한, 장기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제도 설계 등의 문제가 있음
 - ISA에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간소화면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자와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주요 외국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투자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이룰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ISA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일본, 영국, 프랑스)의 제도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지방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세만 연구범위에 포함함
 -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폐지되었는데, 해당 과세제도의 과세대상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소득, 파생결합증권소득, 파생상품소득 등은 본 연구의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8) 김보영(2024), pp. 1~2.

- 보고서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조사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개인자산형성 저축계좌 제도를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자산형성저축계좌제도를 비교하고 제V장에서는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함

II.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현황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득세법」 §16~17에 따라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나 발생한 소득의 형태 및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 성격이 유사한 경우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것이라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대상⁹⁾으로 간주함¹⁰⁾
- 이자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이자 등을 말함
-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을 말함

〈표 II-1〉 한국: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이자와 할인액	제1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2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이자와 할인액	제2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3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제3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9) 문성훈(2021), pp. 41~80.

10) 「소득세법」 §16, §17

〈표 II-1〉의 계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4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4호. 의제배당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5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6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6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7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제7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제8호.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¹⁾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¹⁾
제10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0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2호.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3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3호.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4호.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주: 1)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자료: 「소득세법」 §16, §17

- 다만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공익신탁법」의 공익신탁의 이익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
 - 다음의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를 제외한 주요 비과세 이자·배당 소득을 정리한 것임
 - ISA계좌에 대한 내용은 제II장 제4절에 서술하고 있음

-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을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수탁하고 수탁자가 공익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탁원본을 초과하는 이익(공익신탁 이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됨¹¹⁾
 - 공익신탁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함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장기저축성보험(또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됨¹²⁾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보험의 보험차익만 해당함
 - 주요 요건으로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 ② 매월 납입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저축성보험(순수보장성보험은 한도 제한 없음)
 - ③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과세제외'가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65세 이상의 거주자 등¹³⁾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1) 「소득세법」 §12 1호; 「공익신탁법」

12) 「소득세법」 §16 ①항 9호; 「소득세법 시행령」 §25

13)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¹⁴⁾의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¹⁵⁾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는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농협·수협·산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예탁금에서 발생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함¹⁶⁾

-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함
- 2026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5% 세율로,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됨¹⁷⁾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농협·수협·산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대한 1명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받는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함¹⁸⁾

- 2025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2026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5%, 2027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9% 세율로 분리과세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계약기간 만료, 농어민의 사망·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은 비과세함¹⁹⁾

14)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로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임

15)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16) 「조세특례제한법」 §89의3

17)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비과세됨

18) 「조세특례제한법」 §88의5

19) 증여세·상속세도 비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 연간납입금액 최고한도는 120만원 또는 144만원,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임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²⁰⁾
 - 비과세 요건이란 ①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 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²¹⁾일 것 ③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임
-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농협협동조합」²²⁾ 및 「수산업협동조합법」²³⁾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함²⁴⁾
 - 비과세 요건은 ①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② 보유한 자사지분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임
-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배당,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 소득은 일정 한도를 두고 비과세함
 -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별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 2012. 12. 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장병내일준비적금(현역병 등 월납입액 40만원 한도): 2026. 12. 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청년희망적금(납입한도 연 600만원 이하의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경우): 2022.

20) 「조세특례제한법」 §88의4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의2

22) 「농업협동조합법」 §21의2, §107②, §112②, §112의10②, §147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2의2, §108, §113, §147

24) 「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⑩

12. 31.까지 가입하고, 2024. 12. 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청년도약계좌(납입금액 연 840만원 한도): 2025. 12. 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2025. 12. 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그 외 일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²⁵⁾

- 그 외 일부 배당소득이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며, 면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5% 원천징수세율(개인지방소득세 면제)로 분리과세함
- 해당 조항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까지로 함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면제함²⁶⁾

- 면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 해당 조항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까지로 함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²⁷⁾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1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 해당 조항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까지로 함

25) 「조세특례제한법」 §66②③

26) 「조세특례제한법」 §67②③

27) 「조세특례제한법」 §68④

2. 금융소득 과세제도²⁸⁾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종류별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함
-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임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소득(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임
 -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채택함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표 II-2〉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년)

(단위: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자료: 「소득세법」 §55

28) 이한솔 외(2025), pp. 9~135.

-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함²⁹⁾
 - 이 외에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은 <표 II-3>과 같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94년 세법개정 시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되었고, 이후 2004년 세법개정에 따라 14%³⁰⁾로 재인하된 바 있음³¹⁾³²⁾
 - 소득 구분별 상세한 원천징수세율은 <표 II-4>와 같음

<표 II-3> 한국: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¹⁾가 지급받는 이자(14%) •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않는 이자(4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¹⁾가 지급받는 배당(14%) • 비실명금융소득(45%/90%)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²⁾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³⁾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9%)⁴⁾ • 개인투자용 국채에 과세특례(14%)⁵⁾ • 기획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이자·배당(9%)⁶⁾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²⁾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9%)⁴⁾ • 기획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이자·배당(9%)⁶⁾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⁸⁾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⁸⁾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⁷⁾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5%/14%)⁹⁾

29) 「소득세법」 §14③~④

30) 지방세(10%)를 포함하면 15.4%임

3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04803,1994122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04803,19941222)), 검색일자: 2025. 2. 28.

32) 단,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비실명소득(90%),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비실명소득(90%)은 원천징수세율에 예외를 적용함

〈표 II-3〉의 계속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9%)¹⁰⁾ •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5%)¹¹⁾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9%)¹²⁾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14%)¹³⁾
금융실명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90%) • 1997. 12. 31.~1998년까지 발행된 비실명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15%/20%) 	

주: 1. () 안은 원천징수세율을 나타냄

- 1) 예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 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 2) 2014. 12. 31.까지 가입하는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89)
- 3) 2014. 12. 31.까지 발행된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의 채권의 이자(§29)
- 4)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함(§91의18)
- 5) 개인투자용 국채를 요건을 갖춘 전용계좌를 통해 2027. 12. 31.까지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함(§91의23)
- 6) 2026. 12. 31.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121의35)
- 7) 2024.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인 채권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배당에 대하여 분리과세함(§91의15)
- 8) 2026.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함(§66, §67)
- 9)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2018. 12. 31. 이전에 받는 액면가액 합계액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87의6)
-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2026.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분리과세함(§87의7)
- 11)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가 전용 투자신탁 등에 2010. 12. 31.까지 가입하여 2012. 12. 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91의12)
- 12) 2022. 12. 31.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배당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26의2)
- 13) 요건을 갖추어 2025. 12. 31.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27)

자료: 이한솔 외(2025), pp. 43~49.; pp. 108~114.

〈표 II-4〉 한국: 소득구분별 원천징수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개인 (거주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주: 1. 지방세(10%)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원천징수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검색일자: 2025. 7. 30.

- 최근 「2025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위하여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조세특례제한법(§104 조의27)」에 신설될 예정이라 공표된 바 있음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고배당 상장법인³³⁾ 주주(거주자)의 해당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³⁴⁾함
 -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법인을 말함
 - 단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함
 - 해당 현금배당액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함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33) 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법인을 말함; 단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함

34) 해당 현금배당액에 따라 14%/20%/35%(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3단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함

- 이를 종합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종합과세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함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주요 변천 내용은 <표 II-5>와 같음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가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액을 산출함
- 한편 2006년 금융소득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 아니라 판결한 바 있음³⁵⁾
- 판결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선택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초래될 부정적인 면(행정적 부담, 조세징수비용, 금융권 혼란 등)이 크바,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또한 금융소득 기준금액은 입법자가 국민경제·재정정책·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관점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자의적이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표 II-5〉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주요 변천 내용

개정일자	변천 내용
1994.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전면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2001)’ 도입¹⁾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부부합산 4,000만원
2002.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인별로 판단(개인별 4,000만원)²⁾

35)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 헌마 489

〈표 II-5〉의 계속

개정일자	변천 내용
200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만원 → 1,200만원 - 8,000만원 → 8,800만원
2008.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7/26/35% → (2009년) 6/16/25/35% → (2010년) 6/15/24/33%
200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 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011년) 6/15/24/35% - (2012~) 6/15/24/33%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 신설(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초과(38%)³⁾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만원 → 2,000만원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초과 → 1억 5,000만원 초과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초과(40%)
2017.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단계 구간 신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최고세율(5억원 초과) 인상(42%)
2020.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8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초과(45%)
202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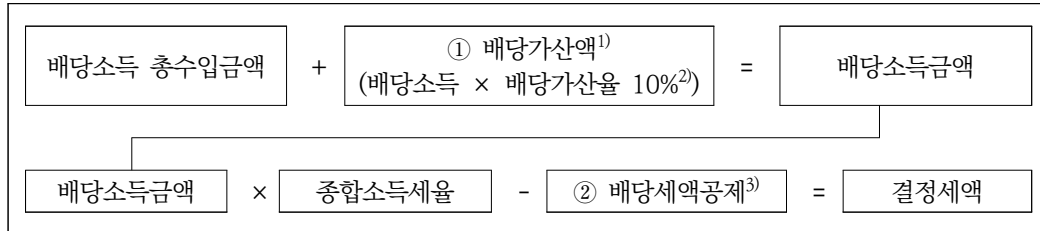
주: 1)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1998~2000년 귀속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1999년 말 관련 법률 개정하여 2001년부터 재실시함
 2) 부부합산과세제도(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3)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8%로 인상함
 4)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pp. 42~4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 각 연도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나,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음
 -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봄
 -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하기 전의 지급받을 금액을 말함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함³⁶⁾

- 배당가산이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을 말함
 -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배당소득 이중과세라고 함
 -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①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② 공제하는 방법을 취함
 - ①의 가산, ②의 공제는 <표 II-6> ①, ② 단계에서 적용됨

36) 단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소득세법」 §17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하지 않음

[그림 II-1] 한국: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 개요



- 주: 1)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배당가산액 (gross-up)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배당가산율은 2024. 1. 1. 이후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함(「소득세법」 §17③)
- 2) 단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7. 1. 1.부터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가산율이 기존 10%에서 11%(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10% / (1 - 10%) ≒ 11%' 산정)로 조정될 예정임
- 3)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배당세액공제는 1), 2)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1) 배당가산액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p. 52.; 이한솔 외(2025), p. 95, p. 134.; 기획재정부(2025. 7. 31.), p. 100.

- 한편 이자소득 금액에 있어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평등 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이 제기된 바가 있었으나 합헌이라 판결됨³⁷⁾
- 이자소득의 본질상 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상정하기 어렵고, 필요경비 발생이 대단히 예외적이라는 점, 이자소득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
- 단 이는 원본의 잠식을 가져오는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이자소득자를 다른 소득자와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음

37)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 헌바 54

[그림 11-2] 한국: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 체계

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② 비과세 금융소득	
-	
③ 분리과세 금융소득	
=	
④ 종합과세 금융소득	
• ① - (② + ③)의 금액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¹⁾	

주: 1) ① - (② + ③)의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함
 자료: 이한솔 외(2025), p. 124.

- 다만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는 경우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소득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비교과세 방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함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표 II-6〉 한국: 비교과세 방법

<p>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아래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함</p> <p>① 다음의 ㉠과 ㉡을 합산한 금액(종합과세 방식)</p> <p>㉠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¹⁾ +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율(6~45%)</p> <p>㉡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14%)</p> <p>② 다음의 ㉢과 ㉣²⁾을 합산한 금액 (분리과세 방식)</p> <p>㉢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p> <p>㉣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율(6~45%)</p>
--

주: 1)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0만원 초과 부분만 Gross-up 적용)
 2) 계산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함

자료: 이한솔 외(2025), p. 133.; 「소득세법」 §6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SA란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ISA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9%)함³⁸⁾
- 가입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인 거주자도 포함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 인출 허용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021년부터)

38)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 계좌 내 자금의 중도 인출로 인한 납입한도 복구는 허용하지 않음
 - 과세혜택: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200만원(서민·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비과세 한도초과분은 9% 원천징수세율³⁹⁾로 분리과세함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농·어·민⁴⁰⁾의 경우 순이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우대형 계좌 가입이 가능함
 - 기타: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 출시되었고, 일몰을 두고 운영되었다가 2020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됨
 - 2020년 말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에서 '만 19세 이상 거주자(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로 확대됨
- ISA계좌는 도입 초기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투자자 자기주도형) 또는 일임형(금융회사 운용형)으로 구분되며, 2021년부터 투자자가 직접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증개형이 신설됨⁴¹⁾
- ISA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상장주식 등이 추가되었음
 - 2023년부터 회사채 및 K-OTC 주식이 편입 가능 자산으로 추가됨⁴²⁾⁴³⁾
 - 가입자는 계좌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신탁형·투자증개형 중 하나의 ISA계좌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후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가입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계좌 내 자산을 환매하여 현금화한 후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음⁴⁴⁾

39) 지방세 포함 시 9.9%

40) 농·어업인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요

41) 금융위원회(2021. 7. 23.), pp. 1~5.

42) 중소·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43) 기획재정부, 『개정세법해설』, 2023, p. 330.

44) 금융위원회(2016. 7. 18.), pp. 1~5.

〈표 II-7〉 한국: ISA제도 주요 변천 내용

개정일자 (시행일자)	변천 내용
2015. 12. 15. (201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당해 또는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일반·농어민형) 200만원 (서민형¹⁾) 250만원 - 편입상품: 예·적금, 예탁금, 금융기관 예치금,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부동산투자회사 주식(REITs) - 납입한도: 2,000만원/연 - 의무가입기간²⁾: (일반·농어민형) 5년 (서민형) 3년 - 적용기한: 2018. 12. 31.까지 가입분 - 기타: 재형저축 비과세특례,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적용 종료³⁾
2017. 12. 19. (201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⁴⁾) 400만원 - 의무가입기간: (일반형) 5년 (서민·농어민형) 3년 - 중도 인출 허용⁵⁾
2018. 12. 24. (20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당해 또는 직전 3개년도 중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적용기한: 2021. 12. 31.까지 가입분(3년 연장)
2020. 12. 29. (20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변경 및 계약기간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⁶⁾(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의무가입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해지,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납입한도: 이월 허용⁷⁾ - 적용기한: 영구화(일몰 폐지) - 운용기관 확대: 신탁업자·금융투자업자에서 투자중개업자 추가 - 운용재산 확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추가(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 금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변경⁸⁾
2021. 12. 28. (202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형 종합소득금액 기준소득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 3,800만원

주: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2) 청년(15~29세) 또는 서민형 가입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3년, 그 외: 5년

3)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본 가입자는 ISA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함

〈표 II-7〉의 계속

개정일자 (시행일자)	변천 내용
	<p>4) 농어민 가입자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초과 시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적용함</p> <p>5)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중 납입금액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예외: 퇴직·폐업 등)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납입 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p> <p>6)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p> <p>7) 납입한도 규정은 2021. 1. 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함: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는 2천만원 × (1 + 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4년))으로 함</p> <p>8) 기존에는 소득 손실(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등 비과세분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음) 보수·수수료를 합계액으로 간주했으나, 개정 후 소득 손실(동일) 주식양도차손(대주주 보유 주식분 제외) 보수·수수료(주식양도차손으로 공제받은 분 제외)를 합계액으로 변경됨</p> <p>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p>

- 2024년 정부는 금융정책 방안(2024. 1.)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⁴⁵⁾
- 주요 내용은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음
- 납입한도: 현행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 수준으로 상향
 - 비과세한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상향
 - 가입대상: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 해당 계획은 2024년 1월 공표되어,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이 진행되었으나 12월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임⁴⁶⁾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며, 국내투자형 ISA 도입 내용은 삭제됨

45) 관계부처합동(2024. 1. 17.), p. 3.

46) 기획재정부(2024. 12. 10.), pp. 5~6.

〈표 II-8〉 한국: ISA 세제지원 확대안(2024. 1.)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1억원(연 2,000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 *한도초과분은 분리과세(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한도: 2억원(연 4,000만원) -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 • 국내투자형 ISA 신설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일반 ISA와 동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³⁾ - 납입한도: 2억원(연 4,000만원) - 비과세한도: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주: 1) 일반 ISA(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음
 2)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3) 국내주식에 일정 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 기획재정부(2024. 1. 31.), pp. 5~6.

- 더불어 2025년에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년 1월)」에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계좌 운용 허용 방안⁴⁷⁾과 「2025년 세제개편안(2025년 7월)」에서 ISA 지원 대상을 명확화⁴⁸⁾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음
 - 현행 ISA는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중 하나만 선택해 계좌 가입이 가능하지만,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다계좌 운용을 허용하고자 함
 - ISA 편입 가능 상품에 대하여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를 제외한

47) 관계부처합동(2025. 1. 2.), p. 21.; p. 60.
 48) 기획재정부(2025. 7. 31.), p. 125.

예금·적금·예탁금,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집합투자증권으로 지
원대상을 명확히 함

4. 금융소득 신고 및 ISA계좌 가입 현황

가. 원천징수

1) 원천징수 신고 현황

- <표 II-9>는 2006~23 과세연도 기간 동안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소득종류별로 소득지급액 등을 집계한 현황임
 - 본 자료는 해당 과세연도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두 번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수와 총 지급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2023년 기준으로 이자소득 총지급액은 51조 6,292억원, 원천징수세액은 5조 2,717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80.4%, 97.0% 증가, 배당소득 총지급액은 33조 6,676억원, 원천징수세액은 4조 1,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 1.7% 감소함
 - 배당소득은 2021년 과세연도에 각각 전년 대비 30.0%, 35.2%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표 II-9〉 한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과세 연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지급액 ¹⁾		원천징수세액 ²⁾		소득지급액 ¹⁾		원천징수세액 ²⁾	
	신고건수 ³⁾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특세	신고건수 ³⁾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특세
2006	103	269,191	2,498	603	33	106,916	1,064	2
2007	104	306,510	2,972	682	34	151,883	1,718	8
2008	105	337,769	3,220	646	33	151,363	1,562	7
2009	105	373,243	3,523	833	31	128,689	1,382	4
2010	104	357,510	3,059	733	34	144,025	1,570	2
2011	103	373,383	3,273	750	33	147,374	1,660	1
2012	105	388,825	3,572	774	35	149,809	1,633	0
2013	106	361,024	3,276	779	35	139,992	1,636	1
2014	107	305,858	2,934	620	37	148,863	1,766	1
2015	110	299,603	2,861	554	39	176,375	2,068	1
2016	113	230,155	2,210	356	41	179,217	2,134	1
2017	120	218,279	2,123	292	46	221,080	2,472	1
2018	126	225,216	2,205	293	53	250,874	2,779	2
2019	131	270,600	2,650	353	57	253,450	3,003	1
2020	137	285,802	2,681	398	63	285,384	3,492	1
2021	146	246,292	2,254	301	71	371,121	4,722	1
2022	160	286,217	2,676	292	73	337,359	4,210	0
2023	166	516,292	5,272	580	76	336,676	4,139	0

주: 1. 해당 연도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실적을 집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두 번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수와 총지급액은 이중으로 계상됨

2. 신고건수는 100건, 금액은 1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1) 과세미달과 비과세 지급분을 포함

2)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

3)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건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소득종류)」, 각 연도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2) 소득분위별 신고 현황

□ <표 II-10>~<표 II-11>은 2019~23 과세연도 기간 동안 이자·배당 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가공하여 소득 10분위별 이자·배당 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세 점유율을 계산한 것임

○ 해당 자료는 과세연도 귀속 제출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과세·면제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 대부분의 이자소득금액 및 이자소득세가 상위 10% 이자소득자에 집중되어 있음

○ 2023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이자소득 상위 10%의 이자소득 금액은 전체의 90.4%이며, 이들 그룹의 이자소득세 금액은 전체의 89.0% 규모임

<표 II-10> 한국: 이자소득 10분위별 소득금액, 소득세액 비율

(단위: %)

소득금액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9	91.0	6.6	1.5	0.5	0.2	0.1	0.1	0.0	0.0	0.0
2020	90.7	6.8	1.5	0.5	0.2	0.1	0.1	0.0	0.0	0.0
2021	90.5	6.7	1.7	0.6	0.3	0.1	0.1	0.0	0.0	0.0
2022	89.7	7.3	1.8	0.7	0.3	0.1	0.1	0.0	0.0	0.0
2023	90.4	7.2	1.6	0.4	0.2	0.1	0.0	0.0	0.0	0.0
소득세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9	91.1	6.6	1.5	0.5	0.2	0.1	0.0	0.0	0.0	0.0
2020	90.7	6.9	1.5	0.5	0.2	0.1	0.0	0.0	0.0	0.0
2021	90.5	6.7	1.7	0.6	0.3	0.1	0.1	0.0	0.0	0.0
2022	89.8	7.3	1.8	0.6	0.3	0.1	0.1	0.0	0.0	0.0
2023	89.0	8.4	1.8	0.5	0.2	0.1	0.0	0.0	0.0	0.0

주: 1. 구분의 '10%'는 '상위 10%'를 의미하며, 20%, ..., 100% 또한 상위 20%, ..., 상위 100%를 의미함

2. 해당 연도 귀속 제출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3.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과세, 면제소득은 제외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4-12 이자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배당소득 또한 대부분의 배당소득금액 및 배당소득세가 상위 10% 배당소득자에 집중되어 있음
 - 2023 과세연도 기준으로 배당소득 상위 10%의 배당소득 금액은 전체의 91.2%이며, 이들 그룹의 배당소득세 금액은 전체의 91.8% 규모임

〈표 II-11〉 한국: 배당소득 10분위별 소득금액, 소득세액 비율

(단위: %)

배당소득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9	93.1	4.3	1.5	0.7	0.3	0.1	0.0	0.0	0.0	0.0
2020	94.6	3.4	1.2	0.5	0.2	0.1	0.0	0.0	0.0	0.0
2021	93.2	4.1	1.5	0.6	0.3	0.1	0.1	0.0	0.0	0.0
2022	92.1	4.5	1.8	0.9	0.4	0.2	0.1	0.0	0.0	0.0
2023	91.2	5.0	2.0	1.0	0.5	0.2	0.1	0.0	0.0	0.0
소득세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9	93.2	4.2	1.5	0.6	0.3	0.1	0.0	0.0	0.0	0.0
2020	94.8	3.3	1.1	0.5	0.2	0.1	0.0	0.0	0.0	0.0
2021	93.5	4.1	1.4	0.6	0.3	0.1	0.0	0.0	0.0	0.0
2022	92.6	4.4	1.7	0.8	0.4	0.1	0.0	0.0	0.0	0.0
2023	91.8	4.8	1.9	0.9	0.4	0.2	0.0	0.0	0.0	0.0

주: 1. 구분의 '10%'는 '상위 10%'를 의미하며, 20%, ..., 100% 또한 상위 20%, ..., 상위 100%를 의미함
 2. 해당 연도 귀속 제출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3.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과세, 면제소득은 제외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나. 종합과세

- 〈표 II-12〉~〈표 II-15〉는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한 자를 기준으로 신고인원, 신고소득, 금융소득 규모별 신고인원 구성비를 산출한 자료임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나 자료에 2천

만원 이하 통계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집계된 것임

1) 신고인원

-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약 75.6% 증가한 33만 6,246명임
 -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이 2012년(5만 5,730명) 대비 147%(13만 7,558명)로 크게 증가함⁴⁹⁾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
 - 최근에는 고금리 및 금융 투자 활성화로 납세자의 금융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⁵⁰⁾에 따라 신고인원 수가 2022년(19만 1,501명) 대비 약 75%(33만 6,246명)로 증가함
 - 고금리 및 금융 투자 활성화 기조와 더불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⁵¹⁾으로 상장 기업의 이익금 배당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신고인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12〉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

(단위: 천명, %)

과세연도	신고인원	전년 대비 증감		과세연도	신고인원	전년 대비 증감	
		증감인원	%			증감인원	%
2006	36			2015	111	-2	-1.8
2007	61	26	71.1	2016	94	-17	-15.2
2008	49	-12	-19.6	2017	134	40	42.1
2009	51	2	3.7	2018	129	-5	-3.5
2010	49	-2	-4.6	2019	159	30	23.6

49) 이상엽·윤성만(2016), p. 19.; pp. 28~30.

50) 『매일경제』,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10년 제자리 과세기준에 증산층으로 번진 금소세」, 2025. 2. 2., <https://www.mk.co.kr/news/economy/11230560>, 검색일자: 2025. 9. 15.

51) 유관기관합동(2024. 2. 26.), pp. 1~5.

〈표 II-12〉의 계속

과세연도	신고인원	전년 대비 증감		과세연도	신고인원	전년 대비 증감	
		증감인원	%			증감인원	%
2011	51	2	4.8	2020	179	20	12.2
2012	56	4	8.8	2021	179	0	-0.1
2013	138	82	146.8	2022	192	13	7.2
2014	113	-24	-17.8	2023	336	145	75.6

주: 1.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한 자를 기준으로 함
 2. 표 안의 인원은 100명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5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각 연도.

2) 신고소득

-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액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74조 9,131억으로 이 중 금융소득은 32조 4,928억으로 약 43% 비중임
- 2023년 기준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의 비율은 약 67%(21조 7,392억), 이자소득의 비율은 약 33%(10조 7,537억)임
- 2006년 이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 중 금융소득의 비중은 약 43~6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5~2022년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 비율은 약 82~90% 규모였으나 2023년 이자소득 금액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약 33% 증가)하여 약 67%까지 감소하였음
 - 다만 배당소득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음(전년 대비 약 0.02% 증가)

〈표 II-13〉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소득

(단위: 억원, %)

과세연도	소득금액 합계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 ¹⁾	1인당 ²⁾			% ³⁾		% ⁴⁾		% ⁴⁾
2006	113,146		3.1	68,601	60.6				
2007	162,723	43.8	2.6	97,388	59.8				

〈표 II-13〉의 계속

과세 연도	소득금액 합계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 ¹⁾	1인당 ²⁾		% ³⁾		% ⁴⁾		% ⁴⁾	
2008	156,401	-3.9	3.2	89,685	57.3				
2009	155,519	-0.6	3.0	87,934	56.5				
2010	173,137	11.3	3.5	98,527	56.9				
2011	192,641	11.3	3.8	102,074	53.0				
2012	204,051	5.9	3.7	106,512	52.2				
2013	279,924	37.2	2.0	125,765	44.9	39,859	31.7	85,907	68.3
2014	265,416	-5.2	2.3	114,974	43.3	30,813	26.8	84,160	73.2
2015	296,129	11.6	2.7	136,539	46.1	25,168	18.4	111,372	81.6
2016	272,687	-7.9	2.9	122,961	45.1	20,086	16.3	102,875	83.7
2017	357,460	31.1	2.7	168,285	47.1	21,431	12.7	146,854	87.3
2018	370,722	3.7	2.9	177,782	48.0	25,260	14.2	152,523	85.8
2019	425,855	14.9	2.7	198,729	46.7	31,490	15.8	167,239	84.2
2020	497,724	16.9	2.8	258,261	51.9	30,545	11.8	227,716	88.2
2021	528,977	6.3	3.0	253,294	47.9	26,100	10.3	227,194	89.7
2022	567,658	7.3	3.0	255,091	44.9	40,921	16.0	214,171	84.0
2023	749,131	32.0	2.2	324,929	43.4	107,537	33.1	217,392	66.9

주: 1.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자를 기준으로 함

2. 금액은 1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의 전년 대비 증감률(%)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중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5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한편 2023년 소득금액 합계액은 74조 9,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2.0% 늘었지만, 1인당 신고 소득금액 합계액은 2억 2,300만원으로 전년(2억 9,600만원) 대비 약 25% 감소함

○ 동일한 기간 동안 1인당 금융소득 합계액은 9,700만원 규모로 전년(1억 3,300만원) 대비 약 27% 감소함

3) 금융소득 규모별 신고인원 및 금융소득금액

- 금융소득 구간별 누적 신고인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초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비율은 각각 전체의 41.0%, 24.7%, 17.5%, 13.5% 규모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기 전인 2012년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비율이 각각 전체의 98.5%, 58.2%, 41.8%, 32.8%였음

〈표 II-14〉 한국: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구성비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0 ¹⁾ 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7	1.1
3,000만원	0.0	0.0	0.0	0.0	0.0	0.0	0.0	43.6	40.3
4,000만원	1.3	1.0	1.7	1.3	1.4	1.7	1.5	18.1	16.8
4,600만원	14.7	16.0	16.0	17.3	15.7	16.4	17.9	6.2	6.1
6,000만원	23.1	23.8	22.8	23.9	22.0	22.0	22.4	8.6	9.2
8,000만원	17.5	18.4	16.9	17.2	16.9	16.4	16.4	6.3	7.1
8,800만원	4.8	4.8	4.5	4.2	4.5	4.3	4.2	1.7	1.8
10,000만원	5.2	5.4	5.2	5.0	5.1	4.9	4.9	1.8	2.3
20,000만원	17.7	17.4	17.9	16.7	18.2	18.0	17.1	6.9	7.8
30,000만원	5.7	5.2	5.6	5.4	5.9	5.6	5.5	2.2	2.6
50,000만원	4.1	3.5	4.2	4.0	4.4	4.7	4.4	1.8	2.1
50,000만원 초과	5.9	4.3	5.3	5.0	6.0	6.0	5.7	2.3	2.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00 ¹⁾ 만원 이하	1.2	2.3	1.4	1.5	2.6	1.6	1.5	1.4	0.8
3,000만원	36.9	33.9	35.5	34.2	36.5	35.1	35.2	36.4	40.4
4,000만원	16.3	15.5	17.3	16.5	17.0	16.6	16.7	16.5	17.8
4,600만원	6.2	6.1	6.4	6.1	5.9	5.7	6.3	6.2	6.6
6,000만원	9.2	9.7	9.6	9.7	9.2	9.2	9.8	9.6	9.7

〈표 II-14〉의 계속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000만원	8.2	8.0	8.0	7.8	7.1	7.1	7.6	7.4	7.2
8,800만원	2.2	2.2	2.0	2.2	2.1	2.1	2.3	2.1	1.9
10,000만원	2.2	2.5	2.3	2.4	2.2	2.2	2.4	2.4	2.1
20,000만원	8.9	9.8	8.8	10.1	9.2	10.4	9.6	9.3	7.6
30,000만원	3.0	3.4	3.0	3.3	2.9	3.5	3.1	3.1	2.2
50,000만원	2.4	2.7	2.4	2.6	2.2	2.7	2.3	2.4	1.6
50,000만원 초과	3.3	3.8	3.4	3.5	3.0	3.8	3.2	3.3	2.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자를 기준으로 함

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임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중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5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금융소득 구간별 누적 금융소득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초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금융소득금액 비율은 각각 전체의 83.5%, 75.4%, 70.2%, 66.5% 규모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기 전인 2012년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초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 비율이 각각 전체의 99.9%, 89.8%, 84.0%, 79.7%였음

〈표 II-15〉 한국: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 구성비

(단위: 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0 ¹⁾ 만원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00	0.0	0.0	0.0	0.0	0.0	0.0	0.0	11.5	9.5
4,000	0.0	0.0	0.0	0.0	0.0	0.0	0.1	6.8	5.7
4,600	3.3	4.3	3.8	4.3	3.3	3.5	4.0	2.9	2.6
6,000	6.3	7.9	6.5	7.3	5.7	5.8	6.1	4.9	4.7
8,000	6.3	8.0	6.4	6.9	5.8	5.7	5.9	4.7	4.8
8,800	2.1	2.6	2.1	2.1	1.9	1.8	1.8	1.6	1.5
10,000	2.5	3.2	2.7	2.7	2.4	2.3	2.4	1.9	2.1
20,000	12.8	14.9	13.6	13.4	12.5	12.4	12.3	10.3	10.5
30,000	7.2	8.0	7.5	7.7	7.1	6.8	7.0	5.9	6.1
50,000	8.3	8.5	8.8	8.8	8.4	9.1	8.8	7.3	8.1
50,000 만원 초과	51.0	42.6	48.6	46.9	53.0	52.6	51.6	42.2	44.4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00 ¹⁾ 만원 이하	0.0	0.1	0.1	0.1	0.1	0.1	0.1	0.1	0.0
3,000	7.2	6.2	6.8	5.9	7.0	5.8	6.0	6.6	10.1
4,000	4.6	4.1	4.7	4.1	4.7	3.9	4.0	4.2	6.3
4,600	2.2	2.0	2.2	1.9	2.0	1.7	1.9	2.0	2.9
6,000	3.9	3.9	4.0	3.7	3.9	3.4	3.6	3.8	5.3
8,000	4.6	4.2	4.4	3.9	3.9	3.4	3.7	3.8	5.2
8,800	1.5	1.4	1.3	1.4	1.4	1.2	1.3	1.3	1.6
10,000	1.7	1.8	1.7	1.6	1.7	1.4	1.6	1.7	2.1
20,000	10.0	10.4	9.6	10.0	10.0	9.8	9.3	9.6	10.7
30,000	5.9	6.3	5.8	5.8	5.6	5.8	5.2	5.6	5.6
50,000	7.4	7.9	7.2	7.2	6.7	7.1	6.3	6.9	6.4
50,000 만원 초과	51.1	51.7	52.2	54.3	52.9	56.4	57.0	54.4	43.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자를 기준으로 함

- 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임
-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
-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중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5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다. ISA계좌 가입·운용 현황

- 다음의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에서 제공되는 ISA계좌 가입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ISA계좌 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별 계좌 수와 투자금액을 산출한 자료임
-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ISA계좌 가입자 수는 631만 6,186명으로 2016년 말(도입) 대비 164.2% 증가, 투자금액은 40조 3,847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083.8% 증가함
- ISA계좌 유형별로 가입자 수는 신탁형이 14.3%, 일임형이 1.9%, 투자중개형이 83.8%이며, 투자금액은 신탁형이 37.2%, 일임형이 2.6%, 투자중개형이 60.2% 비중을 차지함

〈표 II-16〉 한국: ISA 유형별 현황(계좌 수, 투자금액)

(단위: 좌(명), 억원, %)

가입자 수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합계
2016. 3. 31.	1,189,069	98.7	15,156	1.3	-	0.0	1,204,225
2016. 12. 31.	2,113,619	88.4	277,169	11.6	-	0.0	2,390,788
2017. 12. 31.	1,883,829	88.9	236,132	11.1	-	0.0	2,119,961
2018. 12. 31.	1,896,601	88.1	257,163	11.9	-	0.0	2,153,764
2019. 12. 31.	1,836,747	88.4	240,325	11.6	-	0.0	2,077,072
2020. 12. 31.	1,719,444	88.7	219,658	11.3	-	0.0	1,939,102
2021. 2. 31.	1,768,152	85.4	286,137	13.8	14,950	0.7	2,069,239
2021. 12. 31.	841,072	24.6	251,496	7.3	2,330,514	68.1	3,423,082
2022. 12. 31.	897,319	19.4	214,508	4.6	3,518,466	76.0	4,630,293
2023. 12. 31.	867,190	17.6	175,387	3.6	3,889,407	78.9	4,931,984
2024. 12. 31.	856,625	14.3	118,659	2.0	5,009,858	83.7	5,985,142
2025. 6. 30.	905,480	14.3	120,475	1.9	5,290,231	83.8	6,316,186

〈표 II-16〉의 계속

투자금액	신탁형		일입형		투자증개형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6. 3. 31.	6,482	98.1	123	1.9	-	0.0	6,605
2016. 12. 31.	28,520	83.6	5,595	16.4	-	0.0	34,116
2017. 12. 31.	36,643	86.7	5,644	13.3	-	0.0	42,287
2018. 12. 31.	49,137	87.9	6,764	12.1	-	0.0	55,900
2019. 12. 31.	55,156	88.5	7,156	11.5	-	0.0	62,313
2020. 12. 31.	55,887	88.2	7,481	11.8	-	0.0	63,368
2021. 2. 31.	64,826	86.8	9,796	13.1	62	0.1	74,684
2021. 12. 31.	79,772	62.1	12,442	9.7	36,177	28.2	128,391
2022. 12. 31.	107,340	57.8	13,564	7.3	64,810	34.9	185,714
2023. 12. 31.	127,353	54.4	12,995	5.5	93,911	40.1	234,259
2024. 12. 31.	136,343	41.5	9,288	2.8	183,139	55.7	328,770
2025. 6. 30.	150,278	37.2	10,302	2.6	243,266	60.2	403,847

주: 1. 해당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로 2016. 3. 31.은 통계가 작성된 월말, 2021. 2. 31.은 투자증개형 상품에 대한 통계가 작성된 월말, 2025. 6. 30.은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월말의 자료를 기입한 것임

2. 투자원금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업권별 가입현황」,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isa/DISISAIndJoin.xml&divisionId=MDIS07002001000000&serviceId=SDIS07002001000>, 검색일자: 2025. 8. 4.

- 다음은 202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ISA계좌 운용(편입자산) 현황을 나타낸 것임
 - 편입자산 구분별 투자금액 비중은 예적금 등(예금, 적금, 금융기관 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이 41.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ETF 등 상장펀드(25.4%), 주식(20.4%) 순이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전체의 대부분(86.9%)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17〉 한국: ISA 운용(편입자산) 현황 총괄(2025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
예적금 등 ¹⁾		173,646	41.1
RP		5,618	1.3
주식형펀드	국내	1,725	0.4
	해외	7,277	1.7
혼합형펀드	국내	777	0.2
	해외	708	0.2
채권형펀드	국내	5,732	1.4
	해외	472	0.1
MMF		578	0.1
ETF 등 상장펀드		107,185	25.4
파생형		264	0.1
기타펀드 ²⁾		6,468	1.5
파생결합증권 ³⁾		10,636	2.5
주식		86,122	20.4
K-OTC 주식		0	0.0
채권		14,924	3.5
합계		422,128	100.0

주: 1. 평가금액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임

1) 예금, 적금, 금융기관 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을 말함

2) 리츠를 포함

3)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quity Linked Bond), 파생결합사채(Derivative Linked Bond) 등을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운용(편입자산) 현황 총괄」,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isa/DISISAAAssetMgmtStat.xml&divisionId=MDIS0700300100000000&serviceld=SDIS07003001000>, 검색일자: 2025. 8. 25.

Ⅲ.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미국

- 미국의 경우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방식을 병행하여 과세함
 - 배당소득의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배당은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로 분류과세하고 그 외 일반배당은 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 신고 시 신고납부함

- 우리나라의 ISA와 유사한 비과세 저축계좌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가. 금융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⁵²⁾

- 계좌에 적립되거나 수령하는 대부분의 이자는 해당 이자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이 되며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10달러 이상의 과세 또는 비과세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 지급을 보고하는

52) IRS, "Topic no. 403, Interest received," <https://www.irs.gov/taxtopics/tc403>, 검색일자: 2025. 6. 19.

양식의 사본을 해당 이자 지급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양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연방소득세 신고서에 모든 과세 및 비과세 이자를 보고하여야 함

- 납세자는 이자소득 지급인에게 정확한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세대상 이자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은행계좌, 머니마켓 계좌, 양도성예금증서(CD), 회사채 및 예금보험 배당금에서 발생한 이자
 - 이러한 항목에는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 신용조합(Credit Unions), 미국 건축 및 대부조합(U.S.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s), 연방 저축 및 대부조합(Federal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s)의 예금 또는 주식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포함됨⁵³⁾
- 미국 재무부 채권, 어음 및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⁵⁴⁾
- 저축성 채권(Savings Bond) 이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이자소득을 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리즈 EE 및 시리즈 I 저축성 채권⁵⁵⁾의 이자는 ① 채권이 만기되는 시점 또는 ② 채권이 상환되거나 처분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⁵⁶⁾
- 기타 사업체로부터 받은 이자도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됨⁵⁷⁾
 -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이자, 지연된 사망보호금 지급에 따른 이자 등임

53) 일반적으로 배당금(Dividends)이라 불리는 특정 분배금(Distribution)은 실제로는 과세대상 이자 소득에 해당함

54)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연방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모든 주 및 지방 소득세는 과세 면제됨

55) 이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무위험 저축상품으로, 시리즈 EE 저축성채권은 발행시점에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시리즈 I 저축성 채권은 고정금리에 물가연동 변동금리가 합산된 금리가 적용됨

56)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시리즈 EE 및 시리즈 I 채권에서 상환된 이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57) 기타이자도 일반적으로 600달러 이상이면 지급하는 사업체가 Form 1099-INT를 납세자와 국세청에 발령할 의무가 있으며, 600달러 미만인 경우 해당 서류 발급 의무는 없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됨

- 발행할인채(Original Issue Discount, OID) 증권의 할인액도 이자소득에 포함됨
 - 과세 대상인 채권, 약속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권이 할인발행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에서 실제로 이자 지급을 받지 않더라도 매년 일정 금액의 할인분을 이자소득에 포함해야 함⁵⁸⁾

-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는 다음과 같음
 - 1989년 이후 발행된 시리즈 EE 및 시리즈 I 저축성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해에 적격 고등교육비용 지출에 사용하고 교육저축국채프로그램(Educational Savings Bond Program)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음⁵⁹⁾
 - 주정부, 컬럼비아 특별구(D.C.), 미국령(U.S. territory)이 정부 운영을 위해 발행한 일부 채권의 이자는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필요함
 - 이러한 면세이자에는 연방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보고 의무를 위한 것임
 - 미국 재향군인회에 예치된 보험 배당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이자이며 신고의무도 없음

2) 배당소득⁶⁰⁾

- 배당금은 법인이나 뮤추얼펀드가 지급하는 금전,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의 분배금임
 - 파트너십, 유산, 신탁 또는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를 통해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⁶¹⁾
 - 일반적인 분배금의 유형에는 일반배당(Ordinary Dividends), 자본이득분배(Capital

58) 과세대상 발행할인채에서 발생한 이자가 연간 10달러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납세자에게 Form 1099-OID(Original Issue Discount) 또는 유사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에는 납세자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

59) 제외 가능한 이자 금액은 Form 8815(Exclusion of Interest From Series EE and I U.S. Savings Bonds Issued After 1989)를 사용해 계산하고, 그 금액은 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의 Schedule B(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에 표시해야 함

60) IRS(2024), pp. 27~33.

61) 배당이라고 불리는 일부 금액은 실제로는 이자소득일 수 있음

Gain Distributions) 및 비배당분배(Nondividend Distributions)가 있음

- 자본이득분배는 뮤추얼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자본이득에 해당됨
- 비배당분배는 법인이나 뮤추얼펀드의 수익에서 지급되지 않는 배당으로 주식의 가액을 감소시키므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⁶²⁾ 주식의 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비배당분배금은 자본이득에 해당함⁶³⁾

- 일반배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은 적격배당이라 함
- 대부분의 분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 주식, 기타 재산,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반배당은 법인이나 뮤추얼펀드가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으로 일반 소득세율(10~37%)로 과세함

- 일반배당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s, E&P)에서 지급되며, 주주에게는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소득에 해당됨
- 보통주나 우선주로부터 받은 배당은 지급하는 법인이나 뮤추얼펀드가 다르게 통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일반배당에 해당됨

□ 적격배당이란 일반배당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으로, 적격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일반소득세율이 아닌 순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0%, 15%, 20%)로 과세함

- 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적격외국법인이란 ① 미국 영토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② 정보교환프로그램을 포함한 미국과의 포괄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거나 ③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임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통주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을 포함한 총 121일 동안 해당 주식을 60일을 초과

62) 자본금반환이라고도 함

63)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 자본이득으로 구분됨

하여 보유하여야 하고 우선주는 배당락일 전후 90일을 포함한 총 181일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⁶⁴⁾

○ 다음에 열거하는 배당은 적격배당에서 제외함⁶⁵⁾

- 자본이득 분배금
-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신용조합, 미국 건축 및 대부조합, 미국 저축 및 대부조합, 연방 저축 및 대부조합, 및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지급된 배당⁶⁶⁾
- 세금면제조직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지급한 배당
- 고용주가 유지하는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서 지급된 배당
- 기타 적격배당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나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등

□ 자본이득분배 및 비배당분배는 배당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과세함⁶⁷⁾

- 자본이득분배는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비배당분배는 법인 또는 뮤추얼펀드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주식의 장부가를 감소시킴
 - 이는 자본의 반환에 해당되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장부가 0을 초과하여 분배한 분배금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자본이득으로 보고함

64) 주식 보유 일수를 계산할 때 주식을 처분한 날은 포함하되 취득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

65) 해당 금액이 양식 1099-DIV의 1b 항목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적격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66) 이러한 배당은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67) 전병목·송은주·서동연(2022), p. 40.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적격배당은 총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
 - 총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⁶⁸⁾
 - 용역에 대한 보상(수수료, 커미션, 부가급여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을 포함한 보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로열티 수입, 배당금, 연금, 생명보험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소득, 채무 면제에 따른 소득, 파트너십 총 수입의 분배금, 사망자에 대한 소득, 상속재산이나 신탁 지분에서 발생한 소득

-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다음 연도 4월에 소득세 세금신고서(Form 1040)를 통해 자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함⁶⁹⁾
 - 10달러 이상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납세자는 지급자(금융기관)로부터 1099-INT 또는 1099-DIV 양식을 수령함
 - 이자 또는 배당금이 10달러 미만인 경우 증빙서류는 받을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IRS는 모든 금융기관이 1월 31일까지 이 양식을 수령인에게 발송하도록 요구함

1) 이자소득

- 이자소득은 총소득에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함
 - 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단계 누진세율임

68) IRC 26 §61 - Gross income defined

69)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나, 조세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Ⅲ-1〉 미국: 소득세 세율

(단위: 달러, %)

독신	과세표준(2025년)		세율
	부부합산	세대주	
0~11,925	0~23,850	0~17,000	10
11,926~48,475	23,851~96,950	17,001~64,850	12
48,476~103,350	96,951~206,700	64,851~103,350	22
103,351~197,300	206,701~394,600	103,351~197,300	24
197,301~250,525	394,601~501,050	197,301~250,500	32
250,526~626,350	501,051~751,600	250,501~626,350	35
626,351~	751,601~	626,351~	37

자료: Tax Foundation, “2025 Tax Brackets,” <https://taxfoundation.org/data/all/federal/2025-tax-brackets/>, 검색일자: 2025. 8. 4.

□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항목별공제 중 하나로 투자이자(Investment Interest)를 공제할 수 있음⁷⁰⁾

○ 이는 이자 또는 배당수익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산출 시 투자자로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임

○ 일반적으로 투자소득⁷¹⁾에 관련된 투자이자에 대한 공제는 순투자소득을 한도로 제한함⁷²⁾

- 이자비용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소득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은 투자이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순투자소득은 투자소득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한 투자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투자소득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총소득이 포함되며, 배당, 이자, 연금, 로열티 등이 해당됨

- 투자소득에는 적격배당금⁷³⁾이나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순자본이익은 포함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이를 포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음

70) IRS, “Topic no. 505, Interest expense,” <https://www.irs.gov/taxtopics/tc505>, 검색일자: 2025. 8. 7.

71)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분배금이 포함됨

72) IRS(2024), pp. 45~48.; IRC Section 163(d)

73) 적격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됨

2) 배당소득

-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은 해당 배당금이 일반배당인지 적격배당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음⁷⁴⁾⁷⁵⁾
 - 일반배당은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적격배당은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⁷⁶⁾
 - 일반배당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 및 세무신고 유형에 따라 일반소득세율인 10~37%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
 - 적격배당은 과세소득 및 세무신고 유형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됨
 - 즉 적격배당은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납부하지만 저율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류과세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간 5만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 투자자(독신)가 X회사 주식 5천주를 보유하고 연간 1만달러의 배당금을 받고 일반소득에 대해 22%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배당금과 적격배당금의 세금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⁷⁷⁾
 - 일반배당이라면 배당금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200달러의 세금을 부담하고 적격배당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1,500달러의 세금을 부담함
 -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배당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달러이고 X회사 주식 5만주를 보유하여 연간 배당소득이 10만달러인 경우, 일반배당이라면 한계세율 37%가 적용되어 3만 7천달러의 세금을 부담하고 적격배당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2만달러의 세금을 부담함

74) 세금혜택이 있는 계좌(401k, IRA, Toth IRA 등)에서의 배당소득은 퇴직 시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음

75)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24, pp. 27~33.

76) 김문정·이형민·김수린(2024), p. 81.

77) Investopedia, "How Are Qualified and Ordinary Dividends Taxed?,"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taxes/090116/how-are-qualified-and-nonqualified-dividends-taxed.asp>, 검색일자: 2025. 6. 27.

〈표 Ⅲ-2〉 미국: 장기자본이득 세율(2025년)

(단위: 달러, %)

과세표준			세율
독신	부부합산	세대주	
0~48,350	0~96,700	0~64,750	0
48,351~533,400	96,701~600,050	64,751~566,700	15
533,401~	600,051~	566,701~	20

주: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임
 자료: Tax Foundation, "2025 Tax Brackets," <https://taxfoundation.org/data/all/federal/2025-tax-brackets/>, 검색일자: 2025. 8. 4.

-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 형태로 부과하고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면 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개인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는 없음⁷⁸⁾
 - 1986년 세제개혁 이전에는 개인주주 단계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을 100달러까지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적격배당금의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순투자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이하 NIIT)를 추가세금으로 부과함⁷⁹⁾
 - 과세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다음의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⁸⁰⁾
 - 독신 또는 가구주는 20만달러
 - 부부합산신고자는 25만달러, 부부별도신고자는 12만 5천달러
 - 세액은 순투자소득 또는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총소득 중 낮은 금액에

78) 전병목·송은주·서동연(2022), p. 44.
 79) IRS, "Topic no. 559, Net investment income tax," <https://www.irs.gov/taxtopics/tc559>, 검색일자: 2025. 8. 7.
 80) 유산이나 신탁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속 또는 신탁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이 시작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조정총소득이 있는 경우임(2024년 기준 1만 5,200달러임)

3.8%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 일반적으로 순투자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이자, 배당, 특정 연금, 로열티, 임대소득(단 NIIT가 적용되지 않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수동적 활동이나 금융상품 등의 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부동산 등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순이익(단 NIIT가 적용되지 않는 영업활동에서 보유한 자산은 제외)
 - 일반적으로 적극적 경영에 참여한 파트너십 또는 S법인 지분의 매각에서 발생한 순이익

2. 일본

- 일본의 경우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일부 예외 또는 선택규정을 두고 있음
 - 이자소득의 경우 예·적금이자도 분리과세, 공사채이자도 분리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하고 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이자도 그 동족회사 판정의 기초가 되는 주주 등이 받는 이자는 종합과세함
 - 배당소득의 경우 상장주식 배당(대주주 제외)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신고분리 또는 원천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배당(대주주 상장주식 포함)은 종합과세만 적용하되, 소액배당인 경우에는 원천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지급 시점에 15.3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일본은 종전에 일반형·적립형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및 주니어NISA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 신NISA로 통합하여 운영 중임
 - 신NISA는 만 18세 이상인 자가 가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 360만엔, 비과세

보유한도는 최대 1,800만엔임

- 납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가. 금융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이란 예·저금 및 공사채의 이자 및 합동운용신탁, 공사채 투자신탁 및 공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에 관한 소득을 말함⁸¹⁾

- 이자 등의 수입금액(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이 그대로 이자소득의 금액이 됨

- 다음의 제도에 의해 일정 금액의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함

-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

- 이 비과세제도에는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제도와 장애인 등의 소액공채이자 비과세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원금 350만엔까지의 이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됨
-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으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됨
- 장애인 등의 우편저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는 우정민영화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우정민영화 전에 비과세의 적용을 받아 가입된 우편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만기(또는 해지)까지 비과세가 적용됨⁸²⁾

-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및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이자 비과세제도

-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에 근거하는 재형주택저축, 재형연금저축에 대해서 두 가지 저축 원금 합계 550만엔까지의 이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함
- 적용대상자는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에 규정하는 근로자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

81) 일본 국세청, 「No.1310 利息を受け取ったとき(利子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0.htm>, 검색일자: 2025. 5. 30.

82) 우정민영화 후(2007년 10월 1일 이후)에는 우편저금 이자는 장애인 등의 소액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임

하는 자로 한정됨

- 이 외에 납세저축조합예금의 이자, 납세준비예금의 이자, 어린이은행의 예금 등의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함
- 배당소득이란 주주나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이나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기금 이자, 투자법인으로부터의 금전 분배 또는 투자신탁⁸³⁾ 및 특정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수익 분배 등임⁸⁴⁾
- 배당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임
 -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차입금 이자는 주식 등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의 당해 연도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정됨
 - 양도한 주식에 관련된 것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배당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음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⁸⁵⁾

-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10종류로 분류함⁸⁶⁾
- 이 중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8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 후 그 과세소득에 7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함⁸⁷⁾
 - 그러나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83) 공사채 투자 신탁 및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 신탁 이외의 것

84) 일본 국세청,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5. 6. 4.

85) 일본 국세청, 「株式・配当・利子と税」,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4_5.htm, 검색일자: 2025. 5. 21.

86) 일본 국세청, 「No.1300 所得の区分のあらま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00.htm>, 검색일자: 2025. 5. 30.

8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 103.

8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도 완전한 형태의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종합과세 구조는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등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임
 - 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자소득 외에는 각각의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이후 확정 신고 선택 및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분리과세, 신고분리과세, 종합과세 방식으로 구분됨
 - 원천분리과세는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없이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임
 - 신고분리과세는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 관련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종합과세는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일반세율(5~4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 관련 이자비용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1) 이자소득⁸⁸⁾

-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15.315%(소득세 15%, 부흥특별소득세⁸⁹⁾ 0.315%, 그외 지방세 5%, 이하 동일)의 세율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고, 이자의 성격에 따라 원천분리과세, 신고분리과세, 종합과세의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 예·저금, 특정 공사채 이외의 공사채, 사모공사채투자신탁 등의 이자 등은 지급받을 때 그 수입 금액에 15.3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가 완결되는 원천분리과세의 대상이 되어 확정신고를 할 수 없음

88) 일본 국세청, 「No.1310 利息を受け取ったとき(利子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0.htm>, 검색일자: 2025. 5. 30.

89) 부흥특별소득세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2013~2037년) 부과되는 추가 세금임

-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2.1%를 부흥특별 소득세로 소득세에 추가하여 원천징수함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받아야 할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지급받을 때에 세율 15.315%로 원천징수됨과 동시에 신고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신청에 의해 확정신고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신고불요제도라 함)⁹⁰⁾
 - 선택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서 이 선택을 변경할 수 없음
 - 특정 공사채 등⁹¹⁾이란 국채, 지방채, 외국 국채, 공모 공사채, 상장 공사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공사채(동족 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외) 등의 일정한 공사채나 공사채투자신탁 등을 말함
- 다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정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임
 - 특정 공사채 이외의 공사채 이자 중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을 동족회사⁹²⁾가 발행한 사채의 이자로서, 그 동족회사 판정 근거가 되는 일정한 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지불받는 경우
 -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받을 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이자로서,⁹³⁾ 그 동족회사의 판정의 근거가 되는 주주인 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그 법인과 발행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등) 및 그의 친족 등이 지불받은 것

90) 확정신고에서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서 이 선택을 변경할 수 없음

91) 일본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면서 그 핵심 개념으로 '특정 공사채' 개념이 도입되었음.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득 간 과세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특히 채권 양도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음. 즉 2016년 세법 개정 전에는 채권의 이자소득만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 이후 특정 공사채의 양도차익이 과세로 전환되었음. 특정 공사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열거하고 있음(개정 이전에는 세법에서 별도로 공사채를 지정하는 규정이 없었고 2016년 이후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채를 '특정 공사채'라 함)

92) 동족회사란 3명 이하의 주주(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를 말함

93)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임

〈표 Ⅲ-3〉 일본: 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요

이자소득	과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적금 이자 • 특정공사채 이외의 공사채 이자 • 합동운용신탁 및 사모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 분배 	원천분리과세(15.315%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공사채 이자 • 공모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 	신고분리과세(15.315% ¹⁾) 또는 신고불요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공사채 외의 공사채 이자 중 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이자로, 동족회사 판정 근거가 되는 주주 및 친족이 지불받은 이자 	종합과세(5~45%)

주: 1) 그 외 5%의 주민세가 부과됨
 2) 신고불요 선택 시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寺崎寛之(2023), p. 125.

2) 배당소득⁹⁴⁾

- 배당소득은 지불하는 시점에 다음 분류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함
 - 상장주식의 배당(대주주 등이 받는 상장주식 배당은 제외)은 15.315%의 세율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함
 - 대주주 등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 등을 보유한 개인임
 -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2.1%를 부흥특별소득세로 소득세에 추가하여 원천징수함
 - 대주주 등이 받는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이외의 배당은 20.42%(소득세 20%, 부흥특별소득세 0.42%)⁹⁵⁾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상장주식 배당 등(대주주 등이 받는 상장주식 배당 등 제외)과 상장주식 이외의 배당 등(대주주 등이 받는 상장주식 배당 등 포함)에 따라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음

94) 일본 국세청,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검색일자: 2025. 6. 4.

95) 주민세는 없음

- 상장주식 배당 등(대주주등이 받는 상장주식 배당 등은 제외)의 경우 종합과세 대신에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⁹⁶⁾
 - 상장주식 배당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인 상장주식 배당 등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신고분리과세의 세율은 총 15.315%가 적용됨
 - 상장주식 이외의 배당 등 및 대주주 등이 받는 상장주식 배당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분리과세나 확정신고불요제도를 선택할 수 없음
 - 다만 소액배당인 경우는 확정신고불요제도를 선택함으로써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또한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상장주식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받는 자 및 그 지급을 받는 자를 동족회사 판정의 기초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인 경우, 그 지급받는 배당은 대주주 등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분리과세나 확정신고불요제도를 선택할 수 없음
 - 즉 배당받은 당사자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그를 기준으로 동족회사 판정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보유
- 확정신고불요제도란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제도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원천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확정신고불요제도의 대상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수령하는 상장주식 배당 및 투자법인으로부터의 분배(수령하는 배당 금액에 관계없음)와 소액배당임
 - 소액배당은 연간 수령한 배당금액이 10만엔 × 배당계산기간의 월수⁹⁷⁾ ÷ 12 이하인 경우임
 - 확정신고불요제도에는 특정주식투자신탁, 공모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제외)

96) 일본 국세청, 「No.1331 上場株式等の配当等に係る申告分離課税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1.htm>, 검색일자: 2025. 6. 10.

97) 배당계산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2월로 함

- 및 특정투자법인의 배당등도 포함됨
 - 사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및 특정목적신탁(사모에 한정함)의 사채수익권⁹⁸⁾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 제외)의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20.31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결됨
 - 확정신고불요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1회 수령할 배당금액마다(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계좌별로) 선택할 수 있음
 - 확정신고불요제도를 선택한 배당소득에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종합과세란 각종 소득의 금액을 합계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세 세율은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5%에서 45%까지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표 Ⅲ-4〉 일본: 종합소득세 세율

(단위: 엔, %)

과세소득금액	세율
1,000~1,949,000	5
1,950,000~3,299,000	10
3,300,000~6,949,000	20
6,950,000~8,999,000	23
9,000,000~17,999,000	33
18,000,000~39,999,000	40
40,000,000 이상	45

주: 1. 과세소득금액은 1천엔 미만을 절사함

2. 2013년부터 2037년까지의 확정신고에서는 소득세 외에 부흥특별소득세를 소득세액의 2.1% 신고·납부함

자료: 일본 국세청, 「No.2260 所得税の税率」,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검색일자: 2025. 7. 17.

98) 사채적 수익권은 회사채처럼 일정 이율이나 수익률이 보장된 수익구조를 가진 권리를 의미함

-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배당공제라 함⁹⁹⁾
- 배당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¹⁰⁰⁾
 - 배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일본 국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금전의 분배,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 등으로, 확정신고에서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은 배당소득에 한정됨
 -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은 배당공제의 대상이 아님
 - 또한 확정신고불요제도 또는 신고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등¹⁰¹⁾은 배당공제의 대상이 아님
 - 배당공제율은 고액 배당소득자와 저액 배당소득자의 배당공제의 불공평을 완화하고자 1천만엔을 기준으로 차등화¹⁰²⁾하고 배당금 원천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함
 - 배당공제율은 잉여금의 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은 10% 또는 5%(1천만엔 초과분)를 적용하고 증권투자신탁의 수익 분배에 의한 배당소득은 5% 또는 2.5%(1천만엔 초과분)를 적용함
 - 외화표시증권투자신탁의 수익 분배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 공제율의 50%에 해당하는 2.5%, 1.25%(1천만엔 초과분)를 적용함
 - 배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과세 확정신고가 필요함

99) 일본 국세청, 「No.1250 配当所得があるとき(配当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50.htm>, 검색일자: 2025. 6. 4.

100) Money Forward, “配当控除とは? 確定申告での配当金の計算方法までわかりやすく解説,” https://biz.moneyforward.com/tax_return/basic/2317/, 2025. 7. 28.

101) 배당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기금이자, 사모공사채운용투자신탁 등의 수익 분배에 관련된 배당 등, 국외 사모공사채운용투자신탁 등의 배당 등, 외국주가지수연동형 특정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에 관련된 배당 등, 특정 외화표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 분배에 관련된 배당 등,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에 따른 투자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등, 특정목적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등, 특정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등, 투자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등

102) 김문정·이형민·김수린(2024), p. 103.

〈표 Ⅲ-5〉 일본: 배당공제제도의 공제율

구분	과세총소득 ≤ 1천만엔	과세총소득 > 1천만엔			
		과세총소득 - 증권투자신탁 분배금 ≤ 1천만엔	과세총소득 - 증권투자신탁 분배금 > 1천만엔		과세총소득 - (증권투자신탁 분배금 + 배당금) > 1천만엔
배당금 ¹⁾	10%	10%	1천만엔 이하분	10%	5%
			1천만엔 초과분	5%	
증권투자신탁 분배금 ²⁾	5% (2.5%) ³⁾	1천만엔 이하분	5% (2.5%) ³⁾	2.5%(1.25%) ³⁾	2.5% (1.25%) ³⁾
		1천만엔 초과분	2.5% (1.25%) ³⁾		

주: 1) 잉여금의 배당 등에 의한 배당소득
 2) 증권투자신탁의 수익 분배에 의한 배당소득
 3) () 안은 외화표시증권투자신탁의 수익 분배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율임
 자료: 일본 국세청, 「No.1250 配当所得があるとき(配当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50.htm>, 검색일자: 2025. 6. 4.

□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정리하면 〈표 Ⅱ-6〉과 같음

〈표 Ⅲ-6〉 일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요

구분	확정신고		확정신고불요제도 적용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대상	제한 없음	대주주 ¹⁾ 가 아닌 개인이 수령하는 상장주식 배당	대주주 ¹⁾ 가 아닌 개인이 수령하는 상장주식 배당(금액 무관) 또는 소액배당 ²⁾
주식취득 차입금 이자 공제	가능	가능	불가능
세율	누진세율(5~45%)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15.315%, 주민세 5%
배당공제	적용 ³⁾	비적용	비적용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손익통산	불가능	가능	불가능

〈표 III-6〉의 계속

구분	확정신고		확정신고불요제도 적용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 주: 1)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2) 한번에 수령한 배당금액이 10만엔 × 배당계산기간의 월수 ÷ 12 이하인 경우
 3)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등, 특정목적신탁에 관한 배당 등, 특정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 등, 투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등,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분배배당 등은 배당 공제 대상이 아님

자료: 일본 국세청, 「No.1331 上場株式等の配当等に係る申告分離課税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1.htm>, 검색일자: 2025. 6. 10.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는 일본 국민의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내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에 도입한 ‘소액 투자 비과세제도’로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모델로 하였음¹⁰³⁾
-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얻은 이익이나 배당(분배금 포함)에 대해 과세되지만 NISA계좌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은 비과세됨
 - 다만 NISA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음
- 2014년 1월에 일반NISA를 시작으로 2016년 4월에는 주니어NISA(미성년자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2018년 1월에는 적립NISA가 도입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신NISA제도가 도입되었음
 - 종전의 제도가 신NISA제도로 통합되면서 일반NISA, 주니어NISA, 적립NISA의 신규가입은 종료되었음
- 신NISA제도는 대부분 현금 및 예금에 묶여 있는 자산을 투자로 이동시켜 자산소

103) 일본 NISA, 「NISAを知る」, <https://www.fsa.go.jp/policy/nisa2/know/index.html>, 검색일자: 2025. 6. 11.

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자산소득 배증 플랜(資産所得倍増プラン)'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¹⁰⁴⁾

○ 종전의 NISA제도에서 신NISA제도로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

- 일반NISA와 적립NISA는 둘 중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고 교차 투자가 불가능하며 비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경직된 투자시스템임
- 주니어NISA는 제도가 복잡하고 18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했음

○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15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国民の安定的な資産形成の支援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음

-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면 가계의 금융자산이 투자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혜택이 가계에 환원되어 보다 많은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음¹⁰⁵⁾
-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가계의 유가증권 보유비율 상승 등 자산형성과 관련한 진척이 있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일본은 지난 20년간 가계의 금융자산이 1.4배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각각 3.4배, 2.4배 증가함
- 정부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계의 자산형성 촉진을 위해 새로운 NISA제도를 도입하였음

□ 다음은 종전의 일반NISA, 적립NISA, 주니어NISA와 새로 도입한 신NISA제도 각각에 대해 살펴봄

104) 이승주(2024), pp. 1~5.

105) 이병관(2024), pp. 25~26.

□ 일반NISA는 18세 이상¹⁰⁶⁾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4~2023년 기간에 비과세계좌에서 취득한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 그 배당 등이나 그 상장주식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NISA 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장 5년간 비과세하는 제도임¹⁰⁷⁾

-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이고 해당 연도별로 적립NISA와 선택 적용 가능함
 - 즉 한 해에 120만엔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해에 일반NISA와 적립NISA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납입)할 수 있음
- 같은 연도에 일반NISA와 적립NISA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연도가 다르면 어느 해에는 일반NISA를, 그 다음 해에는 적립NISA를 이용(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연도별로 금융업자(증권사 등)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함
 - 연도별로 선택한 제도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 적용되며, 초과납입은 인정되지 않음
- 일반NISA와 적립NISA 모두 계좌 의무유지기간은 없음
 - 매년 입금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기간이 적용되고, 비과세 기간이란 계좌 의무유지기간이 아니라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임
- 인출에 대한 제한이 없고 비과세 기간 이내의 인출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됨

□ 적립NISA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에 비과세 계좌에서 취득한 일정한 투자신탁에 대해 그 수익 분배금이나 해당 투자신탁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적립NISA계좌가 설정된 해의 1월 1일부터 최장 20년간 비과세 되는 제도임¹⁰⁸⁾

- 연간 투자 한도는 40만엔이고 매년 일반NISA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 주니어NISA는 18세 미만 또는 그 해에 출생한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106) 계좌 개설한 해의 1월 1일 현재(이하 동일)

107) 일본 국세청, 「No.1535 NISA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35.htm>, 검색일자: 2025. 6. 11.

108) 일본 국세청, 「No.1535 NISA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35.htm>, 검색일자: 2025. 6. 11.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서 취득한 상장주식 등에 대해 배당금이나 해당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제도임

- 비과세계좌가 설정된 해의 1월 1일부터 최장 5년간 적용되며, 연간 투자한도는 80만엔임

- 신NISA는 2024년 이후에 비과세 계좌와 관련된 적립투자 및 성장투자 한도 내에서 취득한 상장주식 등에 대해 배당금 및 해당 상장주식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제도임¹⁰⁹⁾
 - 가입요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납입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적립투자 120만엔, 성장투자 240만엔임
 - NISA의 연간 비과세 투자범위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¹¹⁰⁾
 - 비과세 보유 한도액: 총 1,800만엔(이 중 성장투자 한도는 1,200만엔임)
 - 비과세 보유 한도액은 매입 잔고로 관리되므로 NISA계좌 내의 상품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를 다음 연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음¹¹¹⁾
 - 비과세 기간: 5년
 - 투자대상 상품은 적립투자와 성장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¹¹²⁾
 - 적립투자: 상장투자신탁수익권(ETF), 공모주식투자신탁수익권임
 - 성장투자: 상장주식, 상장투자신탁수익권(ETF), 공모주식투자신탁수익권, 상장 부동산투자법인투자계좌(REIT)임

109) 일본 국세청, 「No.1535 NISA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35.htm>, 검색일자: 2025. 6. 11.

110) Daiwa Securities, 「NISAの非課税枠を、翌年以降に繰り越すことはできますか」, https://daiwa.dga.jp/faq_detail.html?id=1070, 검색일자: 2025. 8. 19.

111) NISA, 「よくある質問」, https://www.fsa.go.jp/policy/nisa2/question/index.html?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7. 31.

112) 일본 국세청, 「新NISAのあらまし」, <https://www.nta.go.jp/users/gensen/nisa/pdf/shinnisa.pdf>, 검색일자: 2025. 6. 12.

- 투자대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적립투자는 초보자 및 장기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를 낮추고 성장투자는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국채·지방채 등의 특정 공사채, 공모공사채투자신탁수익권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금 등은 비과세 계좌를 개설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상장주식 등의 발행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됨
 - 비과세 계좌에서 취득한 상장주식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은 특정 계좌나 일반 계좌에서 보유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익통산 또는 이월공제를 할 수 없음¹¹³⁾
- 신NISA제도를 시작할 때 2023년까지의 구NISA제도(일반NISA, 적립NI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입시점부터 일반NISA는 5년간, 적립NISA는 20년간 그대로 비과세로 보유가능하고 매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¹¹⁴⁾
- 주니어NISA에서 2023년까지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기간(5년) 종료 후 자동으로 계속관리 계정으로 이관되어 18세가 될 때까지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음
 - 해외 전근 등 일시적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NISA계좌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국 중에 새로운 매입을 할 수 없음
- 2024년부터 종전의 일반NISA, 적립NISA, 주니어NISA가 신NISA제도로 통합됨
되었고, 종전 제도에 의한 계좌에 대해 비과세는 최대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음

113)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 불가 및 이월공제 불가 규정은 기존의 일반NISA 및 적립형 NISA에서도 동일함

114) NISA, 「よくある質問」, https://www.fsa.go.jp/policy/nisa2/question/index.html?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7. 31.

〈표 Ⅲ-7〉 일본: NISA제도 유형별 제도 개요

구분	구NISA			신NISA	
	일반NISA	적립NISA	주니어NISA	적립투자	성장투자
도입 연도	2014년	2018년	2016년	2024년	
제도 현황	2023년 종료	2023년 종료	2023년 종료	기존제도 통합하여 상시제도로 시행 중	
대상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0~17세	18세 이상	
연간 투자한도	120만엔	40만엔	80만엔	120만엔	240만엔
비과세 보유한도	최대 600만엔	최대 800만엔	최대 400만엔	최대 1,800만엔 (성장투자 한도는 1,200만엔)	
비과세 기간 ¹⁾	5년	20년	5년	제한 없음	
투자 대상 상품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 ETF, 공모주식투신, REIT 등	장기·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의 투자신탁	상장주식, ETF, 투자신탁 등	적립NISA와 동일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 ETF, 공모주식투신, REIT 등 ²⁾
투자방식	제한 없음	적립	제한 없음	적립	제한 없음
인출 및 해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세까지 인출제한	제한 없음	

주: 1. 일반NISA, 적립NISA, 주니어NISA는 2023년 종료되어 신규가입은 불가하나 기존 계좌는 비과세 최대기간까지 유지 가능함

1) 의무유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금한 연도부터 해당 기간 동안 비과세가 적용되고, 해당 기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라도 비과세는 적용됨

2)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맞는 투자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높은 레버리지투자신탁 등은 제외

자료: 일본 SBI증권, 「2024年からのNISAの制度変更について」, https://www.sbisec.co.jp/ETGate/WPLETmgR001Control?OutSide=on&getFlg=on&burl=search_nisa&cat1=nisa&cat2=info&dir=info&file=nisa_info221228_01.html, 검색일자: 2025. 6. 13.

일본 국세청, 「No.1535 NISA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35.htm>, 검색일자: 2025. 6. 13.

□ NISA계좌의 이용 현황을 보면, 계좌 수와 매입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일반NISA는 2014년 도입되었고 이보다 늦은 2018년에 적립NISA가 도입되었지만 계좌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적립NISA계좌가 전체의 45.7%에 달함

- 일반계좌는 2014년에 825만개에서 2023년에는 1,152만개로 증가하였고 매입액은 3조엔에서 30.7조엔으로 증가하였음
 - 적립계좌는 2018년 104만개에서 2023년에는 973만개로 증가하였고 매입액은 0.1조엔에서 4.5조엔으로 증가하였음
 - 2024년부터 종전의 일반NISA와 적립NISA로 구분된 계좌는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고 신NISA계좌가 신설되었으며 2025년 3월 현재 2,647만개 계좌가 이용 중에 있음
 - 신NISA계좌 내에서 성장투자과 적립투자과로 구분하여 매입할 수 있음
- 신NISA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24년에는 계좌 수와 매입금액이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됨
- 제도 전체의 누적 계좌 수는 2023년 말 2,125만 계좌에서 2024년 말 2,559계좌로 약 20.4% 증가하였음
 - 제도 전체의 누적 매입액은 2023년 말 35.3조엔에서 2024년 말 52.6조엔으로 약 49.2% 증가하였음
 - 가계의 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등 투자신탁의 비율이 2023년 말 17.7%에서 2024년 말 19.4%로 증가하여 ‘저축에서 투자로’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음¹¹⁵⁾

115) 닛케이基礎研究所, 「新 NISA の利用実態~利用状況調査: 2024 年 12 月末時点(確報値)を踏まえて~」,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2481?site=nli>, 검색일자: 2025. 6. 26., p. 4.

〈표 Ⅲ-8〉 일본: NISA계좌 수와 매입액 현황

(단위: 만개, 조엔,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3
계좌 수	일반NISA	825	988	1,061	1,099	1,150	1,175	1,220	1,247	1,075	1,152	1,152
	적립NISA	-	-	-	-	104	189	303	518	725	973	973
	신NISA	-	-	-	-	-	-	-	-	-	-	434
	합계	825	988	1,061	1,099	1,254	1,364	1,523	1,765	1,801	2,125	2,559
	증가율	-	19.7	7.5	3.6	14.1	8.8	11.7	15.9	2.0	18.0	20.4
매입액	일반NISA	3.0	6.4	9.4	12.5	15.6	17.9	20.7	24.0	27.2	30.7	30.7
	적립NISA	-	-	-	-	0.1	0.3	0.7	1.5	2.9	4.5	4.5
	신NISA	-	-	-	-	-	-	-	-	-	-	17.4
	합계	3.0	6.4	9.4	12.5	15.7	18.2	21.4	25.5	30.0	35.3	52.6
	증가율	-	116.5	46.0	33.2	25.5	15.6	17.6	19.5	17.5	17.5	49.2

주: 1. 적립NISA는 2018년에 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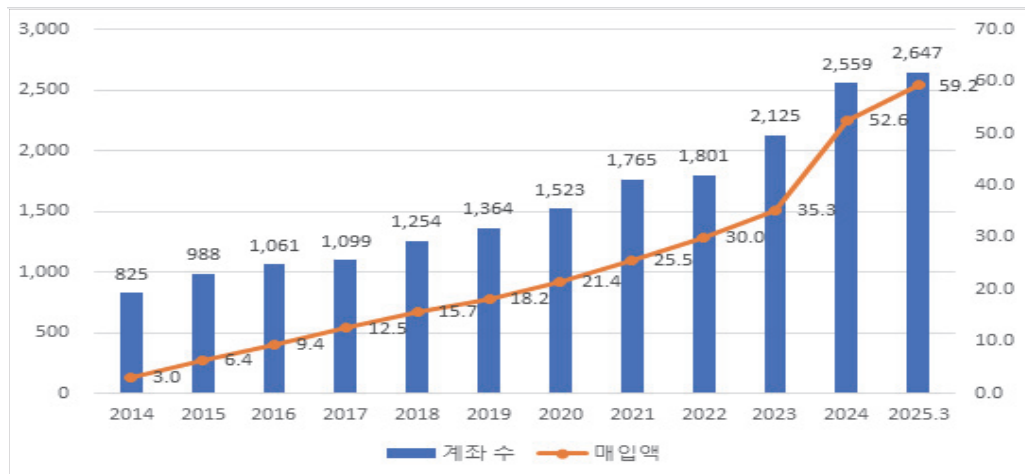
2. 2024년부터는 기존의 일반NISA, 적립NSA가 신NISA로 대체되었음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25), pp. 9~10.

일본 금융청, 「NISA口座の利用状況に関する調査結果の公表について」, <https://www.fsa.go.jp/policy/nisa/20250508.html>, 2025. 7. 24.

[그림 Ⅲ-1] 일본: NISA계좌 수와 매입액 추이

(단위: 만개, 조엔)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25), pp. 9~10.

일본 금융청, 「NISA口座の利用状況に関する調査結果の公表について」, <https://www.fsa.go.jp/policy/nisa/20250508.html>, 2025. 7. 24.

- 신NISA의 2024년과 2025년의 성장투자과 적립투자 매입액의 비중을 보면, 성장투자가 전체 매입액의 71.3%와 75.8%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9〉 일본: 신NISA 유형별 매입액

(단위: 조엔, %)

구분	2024년			2025년		
	성장투자	적립투자	계	성장투자	적립투자	계
매입액	12.4	5.0	17.4	5.0	1.6	6.6
비중	71.3	28.7	100.0	75.8	24.2	100.0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25), pp. 9~10.

- 주니어NISA는 2016년 도입되었으나 2023년 기준 계좌 수는 123.9만개로 일반NISA의 약 10%, 매입액은 1.26조엔으로 일반NISA의 약 4% 수준이었음
-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로 인해 2024년부터는 폐지되었음

〈표 Ⅲ-10〉 일본: 주니어NISA 이용 현황

(단위: 만개, 조엔)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좌 수	19.5	25.7	31.2	35.4	45.4	72.0	101.0	123.9
매입액	0.03	0.07	0.12	0.17	0.25	0.47	0.80	1.26

자료: 일본 금융청, 「NISA口座の利用状況に関する調査結果の公表について」, <https://www.fsa.go.jp/policy/nisa/20250508.html>, 검색일자: 2025. 7. 24.

3. 영국

- 영국은 각 원천별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모두 합산하여 과세구간이 정해지나 저축 소득(이자소득 등) 및 배당소득의 경우 각 과세금액에 별도의 공제 및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류과세 성격을 지님
 - 저축소득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나 배당소득은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납세자가 속한 과세구간에 의해 연계되는 구조임

- 또한 영국은 저축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등의 비과세·감면을 ISA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모두를 비과세함
 - 저축 및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예금형, 증권형, 혁신금융형 ISA와 생애첫주택 및 은퇴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Lifetime ISA를 운영함
 - 예금형, 증권형, 혁신금융형 ISA는 편입가능 자산이 서로 상이함

가. 금융소득의 범위

- 영국은 세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나 판례법 및 계약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¹¹⁶⁾
 - 이자소득은 명시적 합의(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전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실질적 대가를 포괄하며 예금, 대여금 등의 이자와 더불어 선이자 등 할인금, 채무증권으로부터의 소득 등을 말함
 - 배당소득은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에 대한 대가로 분배되는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보며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주식배당, 주식상환초과금, 지분증권에 대한 이자 등 실질적으로 기업 자본 분배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득을 포함

116) 영국 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avings-and-investment-manual/saim2030>, 검색일자: 2025. 6.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248~249.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대표적으로 ISA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있으며, ISA제도 이외의 비과세 금융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음¹¹⁷⁾
 - 공인된 저축 증서에서 발생한 소득, SAYE(Save As You Earn)¹¹⁸⁾ 등 우리나라 제도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일부 VCT(Venture Capital Trust) 배당소득, 매입형 생명연금(Purchased Life Annuity) 지급액 중 일부, 영국 재무부가 발급한 세금 적립증서(Tax Reserve Certificate)의 이자 등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 영국 소득세는 각 원천별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모두 합산하여 세율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에 별도의 세율 및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류과세¹¹⁹⁾되는 특징이 있음
 - 영국은 비저축소득, 저축소득(이자소득 등),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결정세액도 해당 순서대로 계산됨
 - 즉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납세자의 총소득 수준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되며, 결정세액이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누진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종합과세적 성격을 지님
 - 다만 저축소득(이자소득 등) 및 배당소득의 경우 각 과세금액에 적용되는 별도의 공제가 있고, 각각 결정세액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분류과세 성격을 지님
 - 저축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는 납세자의 총소득 수준과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됨
 -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는 납세자의 총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2025/26 과세연도 기준으로 납세자의 총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은 기본세

117)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Last Reviewed: 5 May 2025)," 검색일자: 2025. 6. 4.

118) SAYE, SIPs(Share Incentive Plans), CSOP(Company Share Option Plan) 등과 같은 우리나라 제도 등은 사용자가 종업원(납세자)의 우리나라주매입 및 장기근속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면제하는 제도임

1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52.

율(25%), 고세율(40%), 추가세율(45%)로 구분됨

- 저축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됨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8.75%, 33.75%, 39.35%로 과세됨

〈표 Ⅲ-11〉 영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26년)

(단위: 파운드, %)

구분	비저축소득 ¹⁾	저축(이자소득 등)세율 ²⁾	배당소득세율 ³⁾	예외 ⁴⁾
저축소득공제 (strating rate)	-	0	-	-
기본세율 (£1~37,700)	20	20	8.75	20
고세율 (£37,701~125,140)	40	40	33.75	40
추가세율 (£125,141~)	45	45	39.35	45

주: 1. England, Northern Ireland, Wales 지역에 한함(Scotland는 별도 공시)

1)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의미하며, 2017/18 과세연도부터 소득유형별로 적용세율을 분리하여 고시함

2) 비저축소득이 일정 수준(1만 2,570파운드) 이하인 경우 최대 5,000파운드까지 이자소득에 0% 세율이 적용됨

3) 500파운드 초과(2023/24 과세연도 이전에는 1,000파운드)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당 세율이 적용됨

4) 예외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율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음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budget-2024-overview-of-tax-legislation-and-rates-ootlar/annex-a-rates-and-allowances>, 검색일자: 2025. 6. 16.

□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수령자가 세금신고서를 통해 자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됨¹²⁰⁾

○ 단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배당,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REITs 배당소득 등 일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됨

120) pwc, https://taxsummaries.pwc.com/United-Kingdom/Corporate/Withholding-taxe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6.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 282.

- 산출세액은 과세연도¹²¹⁾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인적공제 (personal allowance, 1만 2,570파운드)¹²²⁾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각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비저축소득, 저축소득(이자소득 등), 배당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세율구간(기본세율, 고세율, 추가세율)이 결정됨
 - 과세표준 계산 및 공제적용은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계산됨
 - 결정세액 또한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누진적으로 계산됨

- 이자소득 등 저축소득(saving income)은 최대 5천파운드까지 0% 세율(strarting rate for savings)이 적용되며, 최대 1천파운드까지 개인저축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 적용도 가능함
 - 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5천파운드)은 비저축소득이 인적공제(1만 2,570파운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파운드당 공제액이 1파운드만큼 줄어들며, 비저축소득이 1만 7,570파운드에 도달하면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
 - 이와 더불어 기본세율(20%), 고세율(40%) 납세자의 경우 각각 1천파운드, 500파운드의 개인저축공제가 적용됨
 - 공제액을 초과하는 저축소득에 대하여 20/40/45%의 세율로 과세됨

-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최대 500파운드까지 배당공제(dividend allowance)가 적용되며 공제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에 따라 8.75/33.75/39.35% 세율로 과세됨
 - 배당공제액은 배당공제를 도입한 최초에는 1만파운드, 2018년 4월 6일 이전에는

121) 직전연도 4월 6일부터 당해연도 4월 5일까지를 말하며, 2025/26 과세연도는 2025. 4. 6.~2026. 4. 5.임

122) 모든 소득(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인적공제금액 한도까지 비과세 대상임; 단 소득(adjusted net income)이 10만파운드 초과 시 초과분 2파운드당 인적공제금액이 1파운드씩 감소하여, 소득이 12만 5,140파운드인 경우 인적공제 금액이 0임; 인적공제 금액은 2010/11 과세연도(6,475파운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인적공제금액은 일부 배우자 및 동반자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도가능함

5천파운드, 2023년 4월 6일 이전에는 2천파운드, 2024년 4월 6일 이전에는 1천 파운드로 점차 감액됨

- 영국 정부는 2022년 가을재정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배당공제금액을 인하함으로써 모든 납세자, 특히 고소득자가 과세를 더욱 부담하는 공정한 방식을 취하고자 함을 언급함¹²³⁾

○ 배당소득세율은 납세자의 종합소득 과세구간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세율 구간은 8.75%, 고세율 구간은 33.75%, 추가세율 구간은 39.35%가 적용됨

- 2016/17 과세연도에 기본세율, 고세율, 추가세율 구간의 배당소득세율이 10%, 33.75%, 37.5%에서 7.5%, 32.5%, 38.1%로 변경되었고, 이후 2022/23 과세연도부터 8.75%, 33.75%, 39.35%로 인상됨

□ 2016/17 과세연도부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임퓨테이션 방식에서 배당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와 더불어 배당소득세율이 조정된 바 있음¹²⁴⁾

○ 배당공제는 배당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임

- 임퓨테이션 방식은 수령한 배당금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배당가산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배당공제, 10%)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임

○ 1997년, 1999년, 2016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임퓨테이션 제도를 폐지함¹²⁵⁾

- 1997년 7월 연금기금 등 비과세 주주들에게 귀속법인세 환급을 폐지함
- 1999년 배당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회사가 법인세를 선납하는 ACT(Advance Corporation Tax)제도를 폐지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
- 2016년 배당소득 임퓨테이션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배당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액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도록 함

123)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duction-of-the-dividend-allowance/income-tax-reducing-the-dividend-allowance>, 검색일자: 2025. 8. 4.

124) 김문정·이형민·김수린(2024), pp. 122~123.

125) 전병목·송은주·서동연(2022), p. 111.

- 의회보고서¹²⁶⁾는 임퓨테이션 방식이 폐지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기존에는 소득이 인적공제 이하, 다른 감면혜택(ISA계좌 등)을 받는 경우 배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일부 고세율 및 추가세율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주어 진다는 비난이 있었음
 - 또한 해당 방식으로 인한 세제 복잡성에 따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겪는 납세협 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상당하다고 인식됨
 - 특히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배당 또는 급여로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으로 배당지급을 선호하여 이는 세수와 사회보장기여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
 - 즉 기존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 세제의 단순화, 탈세 방지, 고소득자 대상 누 진 과세 강화, 세수 확보 등의 목적에 따라 임퓨테이션 방식이 폐지되고 배당공 제가 도입됨
 - 단 해당 세법개정 당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납세자·기업의 혼란을 초래했고, 납세자가 배당공제 허용액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새로 생긴 것으로 평가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영국은 1999년 ISA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합하여 여러 저축상품에 각기 별도의 조세를 지원하기 보다 투자자의 생애주기·연령별 ISA계좌에 조세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²⁷⁾
- 계좌개설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보너스 등에 대한

126) Parliamentary Office / House of Lords Economic Affairs Committee, Chapter 3: Reforming Dividend Taxation (HL Paper 108), 2016, [Online]. London: UK Parliament. [Accessed 30 July 2025].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516/ldselect/ldeconaf/108/10806.htm>

127) 『한국경제』, 「ISA,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2019. 7. 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71053901>, 검색일자: 2025. 6. 18.

소득세 및 자본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세 모두를 비과세하며, 일부 ISA 상품의 경우 정부 보너스 혜택을 제공함

- 도입 당시 10년을 일몰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2008년 제도가 영구화됨¹²⁸⁾
- 현재 ISA계좌 유형은 예금형(cash ISA, 1999년 도입), 증권형(stocks and shares ISA, 1999년 도입), 자녀형(junior ISA, 2011년 도입), 혁신금융형(innovative finance ISA, 2016년 도입), LISA(lifetime ISA, 2017년 도입)가 있음
 - 예금형, 증권형, 혁신금융형 ISA는 계좌 종류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따른 구분이며, LISA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부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며, 자녀형 ISA는 계좌개설 요건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개설할 수 있는 상품임

〈표 Ⅲ-12〉 영국: ISA 유형별 혜택 및 특징

구분	도입목적	혜택	특징
예금형 ISA	저축장려	비과세 ¹⁾ 혜택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의 저축상품, 일부 국영저축은행 상품
증권형 ISA	저축장려	비과세 ¹⁾ 혜택	주식, 유닛 트러스트 및 펀드, 회사채, 국채
혁신금융형 ISA	핀테크 강화	비과세 ¹⁾ 혜택	PTP loans, 클라우드펀딩 채권
LISA	생애첫주택 구입 및 은퇴자금 마련	비과세 ¹⁾ 혜택, 보조금	예금형·증권형 ISA 상품
자녀형 ISA ²⁾	미성년자 저축장려	비과세 ¹⁾ 혜택	예금형·증권형 ISA 상품

주: 1)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말함

2) 자녀 1명당 자녀형 ISA계좌 또는 CTF(child trust fund, 아동형 비과세 저축·투자계좌로 2011년 계좌개설이 종료됨)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으며, 두 제도 간 자금 이전은 가능함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 검색일자: 2025. 6. 18.; 정원석·마지혜(2017. 4.)

□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¹²⁹⁾의 사회보장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가

128) 정인(2016), p. 1.

129) 2024/25 과세연도부터 17세인 거주자의 경우, 현금형 ISA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 있는 거주자¹³⁰⁾인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함
- 예외적으로 출생연도가 2006. 4. 6.~2008. 4. 5.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전이라도 현금형 ISA계좌 1개를 보유할 수 있음¹³¹⁾¹³²⁾
 - LISA의 경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거주자, 자녀형 ISA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법정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함
- 과세연도당 총 2만파운드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과세연도 간 납입한도 이월은 불가능하고, ISA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한 해당 자금을 대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배우자 사망 이후 ISA 납입한도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함
 - 2016년부터 도입된 flexible ISA를 통해 LISA, 자녀형 ISA를 제외한 예금형·증권형·혁신금융형 ISA계좌 간 납입한도 이전이 가능함
 - flexible ISA옵션은 과세연도 내 중도인출된 금액을 동일 과세연도 내 한해 재납입이 가능하게 한 제도임(2016년 당시 1유형 1계좌 원칙이었음)
 - LISA, 자녀형 ISA의 경우 과세연도당 납입한도가 각각 4천파운드, 9천파운드임
 - 이는 납세자 1인당 납입한도 2만파운드에 포함
 - 계좌를 유지하는 한 이미 납입한 금액 내에 비과세 혜택은 계속해서 부여됨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유산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유언집행인이 ISA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ISA 혜택이 종료되며, 납세자 사망 후에도 최대 3년까지 ISA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 2024년부터는 LISA, 자녀형 ISA를 제외한 예금형·증권형·혁신금융형 ISA계좌의 경우 복수계좌 발급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음¹³³⁾

130) 단 납세자 또는 법정 자녀의 부모(또는 보호자)가 영국군인, 외교관, 해외 공무원 등인 경우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ISA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131) 2024년 세법개정으로 현금형 ISA계좌의 최소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는데, 개편시행일(2024. 4. 6.) 직전 16~17세 거주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경과조치임

132) 영국정부, "Tax-free savings newsletter 11," 2024. 5. 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free-savings-newsletter-11/tax-free-savings-newsletter-11?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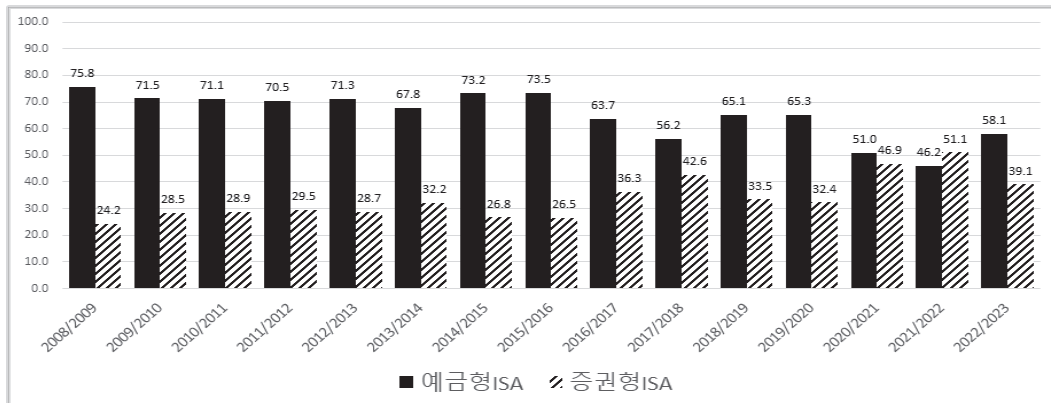
- 납세자는 언제든지 ISA계좌에서 자금 인출이 가능하며 자금 인출로 인한 세금혜택 축소 또는 환불이 없음
 - 단 LISA의 경우 자금 인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 LISA는 납세자의 생애첫주택 마련 및 은퇴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비과세 혜택 이외에 매년 25%의 정부보조금 혜택(50세까지)이 주어짐
 - 계좌 개설 후 12개월 이후 첫 주택을 구매하거나 60세 이후에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이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25%의 인출수수료(=정부보조금 혜택)가 부과됨
 - 계좌 간 투자금액의 전부 및 일부를 다른 계좌 또는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음
 - 단 LISA, 자녀형 ISA의 경우 자금 이전에 제한이 있음
 - 혁신형 ISA의 경우 다른 계좌로 이전은 가능하나 다른 혁신형 ISA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함
 - 자금 이전을 위하여 ISA 상품 제공기관에 사전에 연락해 필요 양식을 작성한 후 15일(ISA 유형 간 이전은 30일 이내에) 이내에 자금을 이전해야 함

- 2022/23 과세기간 동안 약 1,244만 1,000좌가 개설되었고, 이는 2021/22 과세기간보다 5.9% 증가한 수치임
 - 계좌 유형별 비중은 예금형(63.2%), 증권형(30.6%), LISA(6.1%), 혁신금융형(0.1%) 순임
 - 2021/22년 과세기간 대비 증권형 ISA 계좌 발급수가 12만 6,000좌(△3.2%) 감소함

133) 영국정부, 2024. 5., *Tax-free savings newslett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free-savings-newsletter-12/tax-free-savings-newsletter-12-may-2024?utm_source=chatgpt.com.

[그림 III-2] 영국: ISA 유형별 개설계좌 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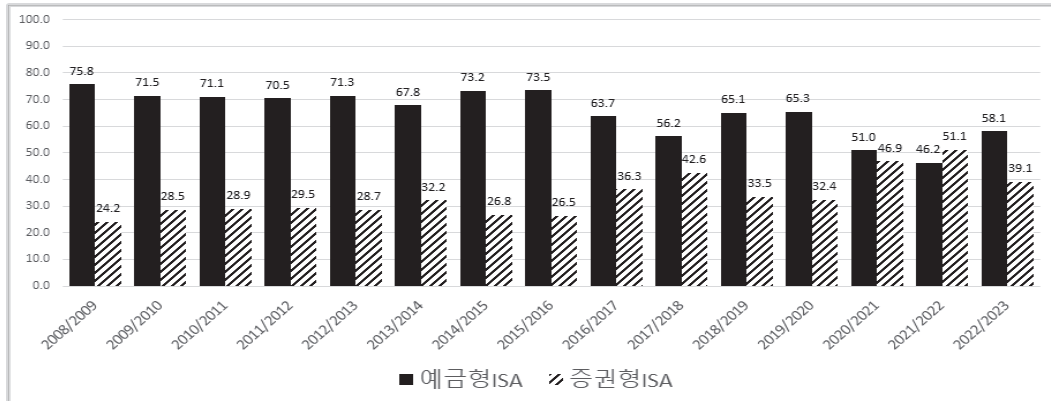


주: 1. 2008/09~2022/23 과세기간 동안 추이이며, 2022/23 과세기간은 추정치임
 2. 혁신투자형 ISA와 LISA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그림에서 제외함(표 III-13)참조
 자료: 영국 정부, "Commentary for Annual savings statistics: September 2024," 2024. 12. 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nnual-savings-statistics-2024/commentary-for-annual-savings-statistics-september-2024>.

- 2022/23 과세기간 동안 계좌납입금액은 71억 6,250만파운드, 이는 2021/22 과세기간 보다 7.0% 증가한 수치임
- 동 기간 동안 현금형 ISA와 LISA 계좌의 납입금액이 각각 34.7%(107억파운드), 10.1%(2억파운드) 증가한 것에 따름
 - 반면 주식형 ISA와 혁신금융형 ISA 계좌의 납입금액은 각각 18.1%, 20.1% 감소함

[그림 Ⅲ-3] 영국: ISA 유형별 계좌납입금액 비율

(단위: %)



주: 1. 2008/09~2022/23 과세기간 동안 추이이며, 2022/23 과세기간은 추정치임
 2. 혁신투자형 ISA와 LISA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그림에서 제외함(표 Ⅲ-13)참조
 자료: 영국 정부, “Commentary for Annual savings statistics: September 2024.” 2024. 12. 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nnual-savings-statistics-2024/commentary-for-annual-savings-statistics-september-2024>.

- 영국 재무부 장관이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현금형 ISA계좌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강한 반발로 보류¹³⁴⁾되었고, 그 밖에 ISA제도 간소화 및 현금형·증권형 ISA계좌 통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
- 국세청 ISA 통계(2024. 9.)를 기반으로 한 AJBell 보고서에 따르면 ISA계좌를 보유한 2,230만명 중 1,440만명은 현금형 ISA계좌만 소유하며, ISA계좌 내 총자산의 가치 7,260억파운드 중 2,940억파운드는 현금형 자산으로 분석됨¹³⁵⁾
 - AJBell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금형 ISA계좌 보유자의 20%만이 현금형 계좌의 혜택이 줄어들다면 다른 ISA계좌를 통한 투자를 고려한다고 응답함¹³⁶⁾

134) Financial Times, “What the chancellor’s financial reforms mean for your money,” July 19, 2025, <https://www.ft.com/content/d13b36b7-d48b-4426-9cc3-617bd3ffb919> (accessed 8 August 2025); MoneySavingExpert, “Martin Lewis: ‘The government has finally listened’ as Cash ISA limit cut reportedly put on hold,” July 11, 2025, <https://www.moneysavingexpert.com/news/2025/07/cash-isa-limit-cut-martin-lewis/> (accessed 8 August 2025)
 135) AJBell, “ISAs unpacked: who holds them and how much do they have?,” March 19, 2025, <https://www.ajbell.co.uk/group/news/isas-unpacked-who-holds-them-and-how-much-do-they-have> (accessed 8 August 2025)

- 거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ISA계좌를 복수 개설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부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ISA제도 간소화 및 통합 방안이 적용 또는 논의되고 있음¹³⁷⁾
 - 이 외에도 ISA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기준 명확화, ISA계좌 운영·감독의 효율화(디지털 보고 의무) 및 투자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의 논의가 있음
- <표 III-13>은 2008/09~2022/23 과세연도의 유형별(예금형, 증권형, 혁신투자형, LISA) 개설계좌 수, 계좌납입금액,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 값을 정리한 것임
- 괄호 안은 해당 구분별 비중을 의미하며,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은 구분별 계좌 납입금액에서 개설계좌 수를 나눈 값임

136) MONEYWEEK, “Reeves should cut cash ISA limit and revive Brit ISA,’ says Merryn Somerset Webb,” July 23, 2025, <https://moneyweek.com/personal-finance/cash-isas/cash-isa-limit-brit-stocks-isas> (accessed 8 August 2025)

137) 영국 정부, “The Individual Savings Account (Amendment) Regulations 2024 (SI 2024/35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4/350/made>, 검색일자: 2025. 8. 11.; 영국 정부, “Tax-free savings newsletter 16,” 2025. 4. 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free-savings-newsletter-16/tax-free-savings-newsletter-16-april-2025?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8. 11.

〈표 III-13〉 영국: ISA 추이(2008/09년~2022/23년)

(단위: 1천좌, 100만파운드, 퍼센트, %)

구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¹⁾
◎ 개설계좌 수															
예금형ISA	12,234 (80.5)	11,426 (79.1)	11,859 (77.8)	11,187 (79.6)	11,682 (80.0)	10,481 (77.8)	10,288 (79.1)	10,118 (79.9)	8,480 (76.6)	7,018 (69.6)	8,476 (75.9)	9,703 (74.6)	8,059 (66.0)	7,139 (60.7)	7,861 (63.2)
증권형ISA	2,960 (19.5)	3,011 (20.9)	3,387 (22.2)	2,863 (20.4)	2,924 (20.0)	2,992 (22.2)	2,711 (20.9)	2,539 (20.1)	2,589 (23.4)	2,869 (28.4)	2,424 (21.7)	2,727 (21.0)	3,589 (29.4)	3,934 (33.5)	3,808 (30.6)
혁신금융형ISA	-	-	-	-	-	-	-	-	5 (0.0)	49 (0.5)	38 (0.3)	34 (0.3)	16 (0.1)	17 (0.1)	17 (0.1)
LISA	-	-	-	-	-	-	-	-	-	154 (1.5)	223 (2.0)	545 (4.2)	553 (4.5)	662 (5.6)	755 (6.1)
합계	15,194 (100.0)	14,437 (100.0)	15,246 (100.0)	14,049 (100.0)	14,606 (100.0)	13,473 (100.0)	12,999 (100.0)	12,657 (100.0)	11,074 (100.0)	10,090 (100.0)	11,161 (100.0)	13,009 (100.0)	12,217 (100.0)	11,752 (100.0)	12,441 (100.0)

◎ 계좌남입금액(100만파운드)

예금형ISA	30,383 (75.8)	31,437 (71.5)	38,197 (71.1)	37,222 (70.5)	40,901 (71.3)	38,821 (67.8)	60,951 (73.2)	58,694 (73.5)	39,191 (63.7)	36,689 (56.2)	43,966 (65.1)	48,745 (65.3)	36,815 (51.0)	30,908 (46.2)	41,627 (58.1)
증권형ISA	9,711 (24.2)	12,542 (28.5)	15,515 (28.9)	15,546 (29.5)	16,459 (28.7)	18,439 (32.2)	22,288 (26.8)	21,129 (26.5)	22,325 (36.3)	27,786 (42.6)	22,618 (33.5)	24,202 (32.4)	33,853 (46.9)	34,187 (51.1)	28,012 (39.1)
혁신금융형ISA	-	-	-	-	-	-	-	-	36 (0.1)	277 (0.4)	328 (0.5)	438 (0.6)	92 (0.1)	144 (0.2)	115 (0.2)
LISA	-	-	-	-	-	-	-	-	-	486 (0.7)	604 (0.9)	1,255 (1.7)	1,482 (2.1)	1,700 (2.5)	1,872 (2.6)
합계	40,094 (100.0)	43,978 (100.0)	53,712 (100.0)	52,768 (100.0)	57,359 (100.0)	57,260 (100.0)	83,239 (100.0)	79,823 (100.0)	61,552 (100.0)	65,238 (100.0)	67,516 (100.0)	74,640 (100.0)	72,243 (100.0)	66,939 (100.0)	71,625 (100.0)

〈표 III-13〉의 계속

구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¹⁾
◎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파운드)															
예금형ISA	2,483	2,751	3,221	3,327	3,501	3,704	5,924	5,801	4,622	5,228	5,187	5,024	4,568	4,330	5,296
증권형ISA	3,281	4,165	4,581	5,431	5,629	6,163	8,221	8,322	8,623	9,685	9,331	8,875	9,432	8,690	7,355
혁신금융형ISA	-	-	-	-	-	-	-	-	7,200	5,653	8,632	12,882	5,750	8,520	6,906
LISA	-	-	-	-	-	-	-	-	-	3,156	2,709	2,303	2,680	2,566	2,478
합계	2,639	3,046	3,523	3,756	3,927	4,250	6,403	6,307	5,558	6,466	6,049	5,738	5,913	5,696	5,757

주: 1. 2008/09~2022/23 과세기간 동안 추이이며, 2022/23 과세기간은 추정치임
 자료: 영국 정부,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September 2024," 2024. 9. 19.,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nnual-savings-statistics-2024>.

4. 독일

- 독일은 2009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통합한 자본소득의 개념을 창설하고 해당 소득금액에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임
 - 다만 개인의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독일은 자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해당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개인별 1천유로의 저축자일괄공제를 적용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별도의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음
 - 필요경비 성격의 저축자일괄공제가 1인당 1천유로(부부합산 2천유로) 적용됨

가. 금융소득의 범위

- 독일은 종류, 형태 및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상품에서 파생된 소득 및 주식의 양도소득 등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모든 소득을 자본소득(Kapitalvermögen)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포함함
 - 독일은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자본소득의 개념을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이하, EStG)」 §20에 정의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동법 §32d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자본소득은 EStG §20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며, 자본소득 안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포함됨
 - 단 EStG §20에 열거된 자본소득의 정의는 예시적이며, 이 외에도 자본소득의 성격을 갖는 모든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간주하여 포괄함
 - 단 자본소득의 정의는 보충적 조항으로 자본소득의 성격을 갖추었으나 다른 소득(농임업소득, 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으로 과세함¹³⁸⁾

□ EStG §20 제1~2항에서 열거하는 자본소득은 다음과 같음

- 자본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말함(EStG §20 Abs. 1)
 - 주식, 이익참여권(Genusssrechten)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기타 이익
 - 법인 등의 청산(해산) 후 발생하는 이익
 - 투자이익(투자펀드로부터 이익¹³⁹⁾ 및 전문 투자이익¹⁴⁰⁾
 - 상업기업에 대한 익명출자¹⁴¹⁾로부터의 또는 수익참가대출¹⁴²⁾로부터의 이익
 - 저당권·부동산담보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연금채무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보험금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 총액 간의 차액(이익)¹⁴³⁾
 - 기타 자본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¹⁴⁴⁾
 - 어음 및 지급명령서에서 발생하는 할인액 및 국채할인어음
 -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이익배당금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
 - 옵션 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옵션 프리미엄
- 다음의 경우에도 자본소득으로 봄(EStG §20 Abs. 2)
 - 법인 지분(주식, 이익참여권 등)의 양도로 인한 이익
 - 배당권리증서 및 기타 청구권¹⁴⁵⁾ 채권 권리자가 채권증서 없이 발행하는 쿠폰 또는 이자청구권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¹⁴⁶⁾

138) EStG §32d Abs. 1

139) 분배금, 선지급금, 처분으로 인한 이익

140)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수익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141) stiller Gesellschafter: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하고 이익에만 참여하는 투자자

142) 대출금에 대해 고정이자자가 아니라 수익에 연동된 보상을 받는 대출 형태

143) 생애연금을 선택하고 수령 중인 경우 등 몇몇 경우의 경우는 제외되며, 펀드 연계보험, 자본선택권이 없는 연금보험 등도 자본소득으로 포함

144) 기업채권 이자, 대출이자, 우발적 조건부 이자수익 등 투자 계약 형태가 어떠한 자본사용의 대가가 약정되거나 수익이 지급된 경우 자본소득으로 봄. 이는 자본 투자의 명칭이나 민법상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됨. 세법상 정의된 환급 이자도 자본소득에 해당함

145) 주식은 보유하나 배당권리증서만 처분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

146) 채권은 보유하면서 쿠폰 및 이자청구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 파생금융거래로 납세자가 차액정산금 또는 변동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금전적 이익, 파생금융거래 형태로 설계된 금융상품 양도로 인한 이익
- 익명 출자 또는 수익참가대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
- 저당권 및 연금채무로부터 이자소득 관련 자산의 권리 이전으로 발생한 이익
-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간 차익과세의 보험수익청구권 양도로 인한 이익
- 기타 자본채권 관련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
- 유사배당소득 수입을 발생시키는 권리적 지위의 양도 및 포기에서 발생한 이익

□ 한편 독일 「소득세법」 §3~3c는 재정적·사회정책적·과세행정적 목적으로 비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없으며, 한국의 ISA계좌와 같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 독일 소득세는 각 원천별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 자본이득 등의 자본소득의 경우 25%의 완납적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자본소득의 개념을 EStG §20에 정의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동법 §32d에 별도로 정의함
 - 2008년까지 이자·배당소득¹⁴⁷⁾은 예납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음
 - 2009년부터 이원적소득세제가 도입되면서 이자·배당·자본이득을 통합한 자본소득의 개념이 창설되었고, 해당 소득금액에 완납적 원천징수세율(단일세율)을 적용해 납세의무를 종결함¹⁴⁸⁾
- EStG §2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은 ① 농임업소득 ② 영업소득 ③ 자유직업소득 ④ 근

147) 배당은 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금액의 50%는 공제하고, 나머지 50%만 과세소득으로 봄

148) 오윤·임동원(2013), pp. 71~72.

- 로소득 ⑤ 자본소득 ⑥ 임대소득 ⑦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자본소득을 제외한 각 원천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2025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은 총 5구간으로 1구간은 기본공제(Grundfreibetrag)로 세액이 0이 되는 구간이며, 다음 2개 구간은 수식으로 이뤄진 곡선형 누진세율 구간, 그 다음 2개 구간은 초과누진세율 구간임¹⁴⁹⁾
-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은 원천징수세율(25%)¹⁵⁰⁾로 분리과세되나 개인의 한계세율이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¹⁵¹⁾
- 원천징수세율은 25%이나 특정 요건¹⁵²⁾을 만족하는 경우 15%가 적용¹⁵³⁾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자본소득의 경우 25% 원천징수 후 환급신청을 통해 15% 실효세율이 적용¹⁵⁴⁾됨
 - 원천징수세율에 5.5%의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를 포함하면 26.375%이며, 경우에 따라 교회세(Kirchensteuer, 8~9%)¹⁵⁵⁾가 추가됨
 -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과세를 신청(연도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모든 자본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동 과세방식이 부부의 모든 자본소득에 적용됨
 - 종합과세방식이 납세자의 소득세액을 낮추는 경우에만 허용됨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세율¹⁵⁶⁾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산정은 자본소득 산정방식에 따름¹⁵⁷⁾¹⁵⁸⁾

149) EStG §32a Abs. 1

150) EStG §43a Abs. 1

151) EStG §32d Abs. 6: 이 경우 유리한 과세(Günstigerprüfung)라고 하며, 이는 해당 납세자의 형평성 확보 차원의 수단임

152) EStG §43 Abs. 1 Satz 1 Nr. 7b: 공공법인 또는 면세법인이 수취하는 자본소득 등 해당 소득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됨

153) EStG §43a Abs. 1 Satz 2

154) EStG §44a Abs. 9: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2/5를 환급함

155) 납부된 교회세는 자산이득 과세 시 공제됨(EStG §32d(1), §43a(1))

156) EStG §32d Abs. 6에 따른 유리성 심사(Günstigerprüfung)를 통해 적용함

157) Deloitte, <https://www.deloitte-tax-news.de/steuern/unternehmensteuer/bfh-kein-abzug-der-tatsaechlichen-werbungskosten-bei-guenstigerpruefung.html#:~:text=Die%20Ermittlung%20oder%20Kapitaleink%C3%BCnfte%20sei,HS%20EStG%20Anwendung>, 검색일자: 2025. 8. 5.

〈표 Ⅲ-14〉 독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년)

(단위: 유로, %)

구분	종합소득세율
12,096 이하(24,192 이하)	0
~17,443(~34,886)	14.00~23.97 ¹⁾
~68,480(~136,960)	23.97~42 ²⁾
~277,825(~555,650)	42
277,825 초과(555,650 초과)	45

주: 1. 단독 신고 시 과세표준을 말하며, () 안은 부부합산 신고 시 과세표준을 말함

1) 세율은 다음의 수식에 따라 결정되며, y는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10,000을 의미함.
수식은 $'(932.30y + 1,400)y'$ 임

2) 세율은 다음의 수식에 따라 결정되며, z는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10,000을 의미함.
수식은 $'(176.64y + 2,397)z + 1,015.13'$ 임

자료: 독일연방법률서비스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20.html, 검색일자: 2025. 7. 1.

□ 단 일부 개인투자자가 사업용 자산(Betriebsvermögen)으로 보유한 법인 지분에서 받은 자본회사 배당 등¹⁵⁹⁾ 및 기타 법인분배금 등¹⁶⁰⁾에 대하여 40%는 비과세하고 60%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부분과세제도(Teileinkünfteverfahren)를 적용함¹⁶¹⁾

○ 적격 개인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적격 개인투자자란 지급법인의 ①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② 지분 1% 이상 보유하며, 회사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투자자임¹⁶²⁾
-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서 제출과 함께 신청하며(5년간 유효), 이후 철회하는

158) 연방재정법원의 2015년 1월 28일 판결문은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20 Absatz 9 EStG und BFH-Urteil vom 28. Januar 2015 - VIII R 13/13, BStBl II S. 393)

159) 법인·조합·자산 집합체의 지분(주식 등) 처분(양도·매각)으로 발생한 수입(EStG §20 Abs. 2 Nr. 1)

160) 법인세 과세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생기는 소득(EStG §20 Abs. 2 Nr. 9)

161) EStG §3 Abs. 40 d)

162) EStG §32d Abs. 3

- 경우 부분과세제도를 재신청할 수 없음
- 부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또한 60%만 공제 가능함
- 부분과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선행되며, 이후 부분과세제도 규정에 따라 소득세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됨¹⁶³⁾
- 자본소득 과세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저축자일괄공제(Sparer-Pauschbetrag)를 적용하여 산출함
- 자본소득은 자본소득 내에서만 손실상계가 가능하며, 주식매각 손실은 주식매각 이익에서만 손실상계가 가능하며,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부부합산 손실상계가 가능함¹⁶⁴⁾
 - 원천징수 후 소득세신고서 작성 시 손실확인서¹⁶⁵⁾를 제출하여 적용함
 - 자본소득 손실은 이전 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 공제가 가능함
 -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성격의 저축자일괄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1인당 1천유로(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2천유로) 규모임¹⁶⁶⁾
 - 공제금액은 2022년 1인당 801유로(1,602유로)에서 2023년부터 약 25% 인상됨
 - 저축자 일괄공제 금액은 2009년 이래로 변동없이 유지되다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 전 독일 연방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때 인상됨¹⁶⁷⁾
 - 린트너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등 금융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였을때 해당 인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함
 -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저축자일괄공제를 신청(Freistellungsauftrag)¹⁶⁸⁾하면, 금융기관에서 공제금액을 한도만큼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음¹⁶⁹⁾

163) 전병목·송은주·서동연(2022), pp. 76~77.

164) EStG §20 Abs. 6

165) EStG §43a Abs. 3 Satz 4

166) EStG §20 Abs. 9

167) Haufe Online Redaktion, "CSU fordert Verdoppelung des Sparerfreibetrags. Haufe. Retrieved," 2023. 10. 5., https://www.haufe.de/steuern/gesetzgebung-politik/csu-fordert-verdoppelung-des-sparerfreibetrags_168_606952.html, 검색일자: 2025. 8. 5.

168) 과세연도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도 환급의 형태로 적용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함

5. 프랑스

- 프랑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지급시점에 12.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원천분리과세 방식이나, 종합과세가 유리한 납세자는 종합과세(0~45%)를 선택할 수 있음
- 프랑스 「일반세법」에 따라 PEA 또는 PEA-PME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함
 - PEA계좌는 일반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가입기관에 따라 은행형-PEA, 보험형-PEA로 구분되며, PEA-PME는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적격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임

가. 금융소득의 범위

- 프랑스에서는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을 금융자본소득(Revenues de Capitaux Mobiliers, RCM¹⁷⁰)이라는 독립된 소득 범주로 구분함¹⁷¹)
 -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다음의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과세함
 -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자본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이자소득, 농업소득, 비상업소득¹⁷²)으로 구분됨
 - 금융자본소득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이 해당됨

169) finanztip, “Schnell erteilt, langfristig Abgeltungssteuer gespart,” <https://www.finanztip.de/freistellungsauftrag/>, 검색일자: 2025. 7. 2.

170) Revenues de Capitaux Mobiliers는 이동자본소득 또는 금융자본소득으로 번역됨

1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pp. 431~432.

172) 비상업소득은 개인 또는 파트너십 구성원이 행한 상업적 성격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적 위치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수입, 지적·예술적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서의 수입 등이 포함됨

- 이자소득은 채권 및 사채, 국채 및 대출증서, 자본화계약, 양도성 채무증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총액으로 결정됨¹⁷³⁾

- 프랑스 「일반세법」 제157조에서 사회·경제적 목적의 비과세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계좌 및 이자는 다음과 같음¹⁷⁴⁾¹⁷⁵⁾
 - 대표적인 비과세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PEA(Plan d'Épargne en Actions)로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함
 - 리브레 A(Livret A) 저축통장에 예치된 자금의 이자(최대 예치금 2만 2,950유로)
 - 중저소득층 저축계좌(Livret d'Épargne Populaire)에 예치된 자금의 이자
 - 2025년에 소득이 2만 2,823유로 미만인 납세자가 개설할 수 있음(최대 예치금 1만유로임)
 - 12~25세의 연령에 속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소년 저축계좌(Livret Jeunes)의 이자(최대 예치금 1,600유로임)
 - 지속가능개발 저축계좌(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의 이자(최대 예치금 1만 2천유로임)
 - 그 외 기후미래저축계좌 등이 있음

- 배당소득은 법률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부과되는 단체가 지급한 배당금만을 포함함¹⁷⁶⁾¹⁷⁷⁾
 - 법인소득세 부과단체 이외 단체에서 발생한 이익은 개별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과세함

173) CGI Article 125

174) CGI Article 157

175)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April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fr_s_001.html%23ita_fr_s_1.10., 검색일자: 2025. 7. 8.

176)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April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fr_s_001.html%23ita_fr_s_1.10., 검색일자: 2025. 7. 8.

177) CGI 108

- 배당금에는 주주결의에 따라 이익이나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정기배당금과 과세 대상 간주배당¹⁷⁸⁾이 포함됨
 - 간주배당에는 이익을 적립금 계정에 적립하지 않거나 자본금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이익에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됨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지급 시점에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되나, 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017년까지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12.8%로 원천징수한 후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 세액이 정산되는 방식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12.8%¹⁷⁹⁾로 원천징수하고 별도의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2017년까지는 이자와 배당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는 선납의 성격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차이가 있음
 - 종합과세 선택은 연소득 전액에 대해 일괄 적용하며 부분 적용은 불가함
 - 이자와 배당 소득계산 시 별도의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 2018년 1월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PFU (Prélèvement Forfaitaire Unique, 이하 'PFU')제도가 도입되었음¹⁸⁰⁾¹⁸¹⁾

178) 간주배당에는 이익적립금 계정에 계상되지 않거나 회사 자본금에 전입되지 않고 이익금에서 유래되지 않은 자금 등이 해당됨

179) 실제 원천징수는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부담금 17.2%를 합한 30%의 세율이 적용됨

180) French-Property, "Guide to French Income Tax - 8. Taxation of Savings Interest and Investment," <https://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taxation/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5. 7. 7.

181) 단일세율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24%, 배당소득에 대해 21%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나, 세율이 12.8%로 인하되었고 사회보장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 동 제도의 목표는 이전에 소득세 일반 세율로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던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데 있음
 - 제도 개정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소득세 한계세율 30% 이상인 고율의 납세자이고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던 납세자들의 경우 더 불리해질 수 있지만, 이 PFU 대신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PFU 제도에 의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2.8%의 소득세와 17.2%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부담함¹⁸²⁾
 - 사회보장부담금 17.2%는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9.2%, CRDS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0.5%, 추가사회부담금 7.5%의 합계임
- 만일 과세소득이 다음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12.8%의 원천징수세(Prélèvement Forfaitaire Non Libératoire, PFNL)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세대: 이자소득 2만 5천유로 이하, 배당소득 5만유로 이하
 - 부부세대: 이자소득 5만유로 이하, 배당소득 7만 5천유로 이하
-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신청은 배당 또는 이자가 지급되기 전 해의 11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신청한 해의 이전 연도 소득세 납세통지서를 기준으로 심사함¹⁸³⁾
 - 원천징수 면제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소득이 낮은 경우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의 일환임

개정되었음

- 182) 2019 재정법에 따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EEA 국적 외국인인 사회복지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재정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모든 투자수익과 자본이득에 7.5%의 연대세(prélèvement de solidarité)를 도입함에 따라 17.2% 대신 7.5%의 사회복지비용을 부담함. 즉 이 규칙이 적용되는 프랑스 내의 EEA 국적 외국인은 총 20.30%의 세율을 적용받음
- 183)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해당 신청은 2021년에 발급된 2020년 소득세 납세통지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일세율의 원천징수세인 PFU 적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¹⁸⁴⁾
- 종합소득이 낮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시 누진세율이 낮을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 배당소득의 경우 누진세율 선택 시 배당금의 40%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60% 금액만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지만 공제는 없음
- 종합과세의 경우에도 사회보장부담금 17.2%는 동일하게 부담함¹⁸⁵⁾
-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선택을 체크하여 신청함
- 소득세 세율은 0~45% 5단계 누진세율임¹⁸⁶⁾

〈표 Ⅲ-15〉 프랑스: 소득세율(2024년)

(단위: 유로, %)

과세표준	세율
0~11,497	0
11,498~29,315	11
29,316~83,823	30
83,824~180,294	41
180,294~	45

주: 자녀 없는 독신에 적용되는 세율임

자료: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April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fr_s_001.html%23ita_fr_s_1.10., 검색일자: 2025. 7. 8.

184) French-Property, “Guide to French Income Tax - 8. Taxation of Savings Interest and Investment,” <https://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taxation/investment-income>, 검색일자: 2025. 7. 8.

185)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일부인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186) 프랑스 소득세제상 과세단위는 가족이므로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

- 2017년 프랑스 정부는 자본과세를 더욱 효율적이고 성장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세제개혁을 시행하였음¹⁸⁷⁾
- 당시 개인 단계에서 부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시스템은 복잡하고 금융·저축 수단별로 과세방식이 달라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세제가 지닌 왜곡과 비효율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조세체계를 성장과 고용 창출에 대해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었음
 - 2017년 출범함 마크롱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친시장·친투자 개혁의 일환으로 자본소득에 대해 PFU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간결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음¹⁸⁸⁾
 - 2018년 금융자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제도인 PFU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최고 45%인 누진적인 소득세율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적용되어 총 세부담이 6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있었음
 - 당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도입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인해 자본 유출과 세원 잠식 우려가 있었음
 - PFU의 도입은 프랑스를 투자 친화적 국가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국제 투자자와 고소득자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였음

187) IMF(2017), p. 3.

188) Lui Président, “Prélèvement unique sur les revenus du capital de 30%,” https://www.luipresident.fr/emmanuel-macron/engagement/prelevement-unique-sur-revenus-du-capital-30-48838/?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7. 14.

〈표 Ⅲ-16〉 프랑스: 이자·배당 과세제도의 PFU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구분	PFU 도입 전(2017년 까지)	PFU 도입 후(2018년부터)
기본 과세방식	일반소득과 통합하여 누진세율 적용	단일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 (배당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	최대 45% (소득구간에 따라 0~45%)	12.8% 단일세율
총 세부담 (소득세 + 사회보장기여금)	최대 62.2% (45% + 17.2%)	30% (12.8% + 17.2%)
특별공제	배당에 대해 40% 공제 적용	적용 불가 (배당은 종합과세 선택 시 40% 공제 적용)
신고방식	소득세 신고 후 정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는 선택 적용)

자료: 본문 및 홍범교·구문정·홍성희(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프랑스는 비과세 금융소득제도 중 하나로 Plan d'Epargne en Actions(이하, PEA) 제도가 있으며, 이는 PEA계좌¹⁸⁹⁾에서 발생한 금융자본소득(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¹⁹⁰⁾
- 「일반세법」 제157조에 따라 PEA계좌¹⁹¹⁾에서 발생한 금융자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계좌의 운용방식에 대한 사항은 「통화금융법」¹⁹²⁾에 따름¹⁹³⁾
- 단 비상장 법인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 수익은 소득세 일부만 비과세함
 - 자본소득의 경우 투자금의 10% 한도, 자본이득의 경우 투자금의 2배 한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함

189) CGI, §163 quinquies D

190) CGI, §157

191) CGI, §163 quinquies D

192) CMF, §L221-30, §L221-31, §L221-32, §L221-32-1, §L221-32-2, §L221-32-3

193) CGI, §157 5° bis

- 일반적인 PEA계좌는 가입기관에 따라 은행형-PEA, 보험형-PEA로 나뉘며, 2014년 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전용 계좌인 PEA-PME¹⁹⁴)가 도입됨
- PEA는 1992년 정부가 개인의 주식투자 장려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계좌당 투자 금액 15만유로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적격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¹⁹⁵)
 - 가입요건: 세법상 프랑스 거주자인 성인(만 18세 이상)¹⁹⁶)
 - 거주자의 자녀 또한 특별한도(2만유로) 내 PEA계좌 개설이 가능함
 - 단 거주자 1인당 1개의 PEA계좌(은행형 또는 보험형)만 개설할 수 있음
 - PEA계좌는 가입기관 구분에 따라 은행형-PEA(PEA bancaire), 보험형-PEA(PEA assurance)계좌로 나뉘며, 전자는 투자자가 개별 주식 등을 증권계좌에 직접 보유하는 형식, 후자는 보험계약을 통해 펀드 등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자산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임
 - 의무가입기간: 5년¹⁹⁷)
 - 중도인출 시 계좌해지로 간주하며,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존의 분리과세 소득세율(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도 가능)로 과세되며,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단 인출금액이 창업 또는 기업의 인수자금으로 재사용되는 경우, 해고·중증장애·조기은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 납입한도: 총 15만유로/5년¹⁹⁸)
 - 과세혜택: 계좌 내 적격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12.8%)를 비과세하나, 사회보장기금(17.2%)은 과세함

194) Plan d'épargne en actions destiné au financemen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t des 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195)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bofip/3786-PGP.html/identifiant=BOI-RPPM-RCM-40-50-20240730>, 검색일자: 2025. 7. 7.

196) CMF, §L221-30

197) CMF, §L221-32

198) CMF, §L221-30

- 기타: 「통화금융법」 §L221-31에 따른 투자자산¹⁹⁹⁾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EU 및 EEA 내 본사를 둔 기업의 상장주식,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비상장주식, 협동조합·상호조합의 투자증서, 유럽 내 유한책임회사(SARL)²⁰⁰⁾의 지분,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의 자본증권, 집합투자상품²⁰¹⁾ 등을 의미함
- PEA-PME²⁰²⁾는 2014년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계좌당 투자금액 22만 5천유로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적격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²⁰³⁾
 - 가입요건, 의무가입기간 및 과세혜택에 대한 내용은 PEA계좌와 동일함
 - 납입한도: 총 22만 5천유로/5년
 - 거주자가 PEA, PEA-PME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두 계좌를 합산한 총 납입한도는 22만 5천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통화금융법」 §L221-32-1에 따른 투자자산²⁰⁴⁾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투자증서, 유한책임회사 등의 지분, 협동조합의 자본증권, 전환사채 및 주식상환채, 크라우드펀딩 또는 투자중개인의 경유로 취득되는 참여증권, 고정금리 채권 등을 말하며, 해당 중소·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²⁰⁵⁾
 - 비상장 회사의 경우, 종업원수 5천명 미만, 연매출 15억유로 이하 또는 총자산 20억유로 이하일 것

199) 증권(보통주, 기업 투자증서, 협동조합 투자증서, 상호조합/상호주보기관 상호증서), 지분(유한책임회사 등, 협동조합의 자본증권), 자본증가 과정에서 발행된 적격주식인수권, 이 외의 적격 간접투자증권 등을 말함

200) 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의미함

201) 해당 포트폴리오의 75% 이상이 유럽, EEA 내 본사를 둔 기업의 주식 및 자본증권에 투자되어야 함

202) Plan d'épargne en actions destiné au financemen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t des 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203)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bofip/9878-PGP.html/identifiant=BOI-RPPM-RCM-40-55-20240730>, 검색일자: 2025. 7. 8.

204) 증권(보통주, 기업 투자증서, 협동조합 투자증서), 지분(유한책임회사 등, 협동조합의 자본증권), 전환·상환형 채권, 참여증권, 고정금리 채권, 신주인수권 등을 말함

205) 프랑스 국세청,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85/personnalisation/resultat?lang=&quest0=2&quest=>, 검색일자: 2025. 7. 23.

- 상장 회사의 경우, 시가총액 20억유로 미만(또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적어도 1회계연도 종료시점의 시가총액이 20억유로 미만)일 것
 - 또한 간접 투자상품의 경우 중소기업 자산이 7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적격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2024년 연도 말 기준으로 PEA 보유증권잔액²⁰⁶⁾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1,140억 5,900만유로이며, PEA-PME 보유증권잔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9억 3,500만유로임
- 보유증권잔액은 2022년 3분기 크게 감소한 가운데 2023년 회복세가 2024년까지 이어졌으나 이는 2023년 증가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임
 - CAC 40지수²⁰⁷⁾가 2.15% 하락하는 등 주가지수가 소폭 조정되었음에도 증가함
 - 현금입금액은 PEA, PEA-PME 계좌 각각 66.5%, 15.7% 증가함
 - 주로 계좌개설 5년 미만인 계좌에서 이루어졌으나 증가분의 1/3은 계좌개설 8년 이상인 계좌에서 이루어짐
 - PEA, PEA-PME 계좌 내 약 70%가 상장·비상장 주식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 중 각각 89%, 96%가 프랑스 기업에서 발행된 것임
 - 2024년 연도 말 기준 PEA-PME 보유증권잔액은 전체(PEA + PEA-PME)의 2.5% 규모임

206) 계좌 내의 주식 등 금융상품의 총 자산액

207)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큰 40개 주요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종합 주가지수임

〈표 Ⅲ-17〉 프랑스: PEA, PEA-PME 계좌 현황(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유로, %)

구분	PEA			PEA-PME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보유증권잔액 (Encours titres)	112,674	114,059	1.23	2,657	2,935	10.46
현금예치금 (Montant Dépôts)	16,444	14,012	-14.79	709	641	-9.59
입금액 (Versements)	4,514	7,515	66.48	337	390	15.73
출금액 (Retraits)	5,995	7,312	21.97	310	372	20.00
평균 보유증권액 ¹⁾ (Encours titres moyen)	6,856	7,312	6.65	9,818	372	-96.21
연말기준 계좌 수 (Nombre de plans en fin d'année)	6,986,282	7,283,376	4.25	270,631	291,045	7.54
- 증권계좌수 ²⁾	5,236,241 (75.0)	5,396,052 (74.1)	3.05	118,474 (43.8)	129,772 (44.6)	9.54
연도 내 해지 계좌 수 (Nombre de plans clos au cours d'année)	317,224	328,525	3.56	12,974	15,118	16.53
- 운용기간 5년 이하 ²⁾	113,440 (35.8)	115,230 (35.1)	1.58	5,842 (45.0)	7,006 (46.3)	19.92

주: 1) 계좌당 평균 보유 증권액(유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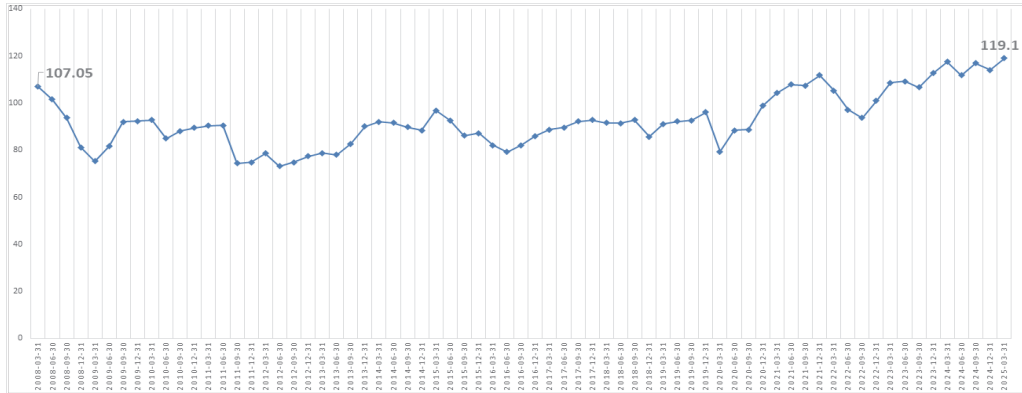
2) ()는 각각 연말기준 계좌 수 중 증권계좌 수 비율, 연도 내 해지 계좌 수 중 운용기간 5년 이하 계좌 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Plan d'épargne en actions 2024," 2025. 6. 5., <https://www.banque-france.fr/fr/statistiques/epargne/plan-depargne-en-actions-2024>, 검색일자: 2025. 7. 23.

- 2025년 1분기 PEA 보유증권잔액은 약 1,190억유로로, 이는 2008년 1분기 보유 증권잔액(약 1,071억유로) 대비 11.3% 증가한 것임
- 2025년 1분기 PEA 보유증권잔액은 2008년 1분기~2025년 1분기 중 최대 규모임
- 2022년 1분기 PEA 보유증권잔액이 전분기(2021년 4분기) 대비 17.4% 감소함

[그림 III-4] 프랑스: PEA 보유증권잔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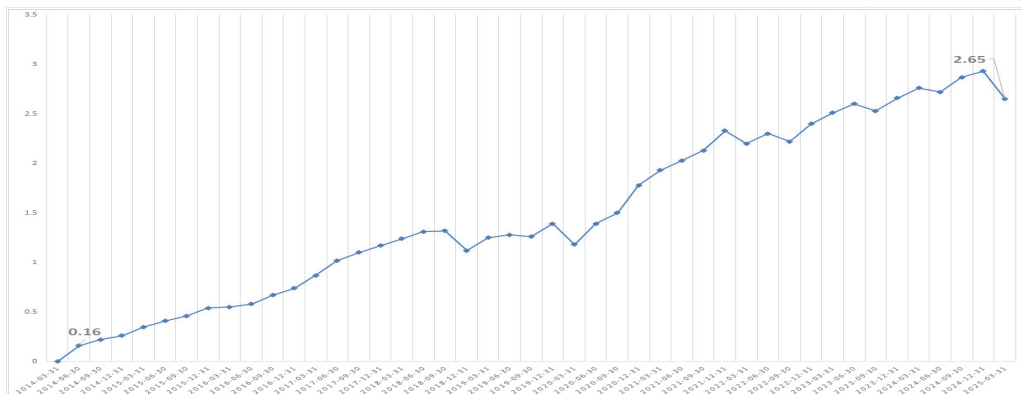


주: 1. 2008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추이임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https://webstat.banque-france.fr/fr/catalogue/cons/CONS.Q.FR.PEA.W0.1000.AT1000.M.1.Z01.E.Z.Z.Z.Z>, 검색일자: 2025. 7. 23.

- 2025년 1분기 PEA-PME 보유증권잔액은 약 27억유로로, 이는 2014년 2분기(약 2억유로)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임
- 2024년 4분기 최대 규모(약 29억유로)로 증가하였다가 9.6% 감소함

[그림 III-5] 프랑스: PEA-PME 보유증권잔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주: 1. 2014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추이임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https://webstat.banque-france.fr/fr/catalogue/cons/CONS.Q.FR.PME.W0.1000.AT1000.M.1.Z01.E.Z.Z.Z.Z>, 검색일자: 2025. 7. 24.

IV. 국제비교

1. 금융소득 과세체계

가. 이자소득 과세제도

- 조사대상국의 이자소득 과세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독일, 프랑스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은 종합과세, 영국은 분류과세 하나의 방식을 적용함²⁰⁸⁾
-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함
 -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일본은 이자소득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함
 - 예외적으로 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이자로 그 동족회사 판정의 기초가 되는 주주가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함
- 미국과 영국은 이자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시점에 신고납부하는 공통점이 있음
 - 미국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함

208)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김문정·이형민·김수린(2024), p. 7.)

-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통상적인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등 하나의 과세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
- 분류과세: 통상적인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별도 분류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로 과세하는 방식
-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할 수 있는 소득 등에 대하여 별도의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

- 영국은 이자소득을 저축소득이라는 별도의 소득으로 구분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지만 인적공제 등이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적용되고 세율이 타 종합소득 수준과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종합과세 성격의 분류과세라 할 수 있음
 -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함
- 독일과 프랑스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종합과세가 유리한 납세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과거에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였으나 각각 2009년, 2018년 분리과세로 전환하였음
 - 독일은 국외 자본이탈 방지 및 금융소득세제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자본소득(이자·배당·금융상품에서 파생된 소득 및 주식의 양도소득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별도로 과세하는 새로운 과세방식을 도입함
 - 프랑스는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단일세율로 전환하였고 제도 개정으로 고율의 납세자의 혜택이 커지고 저율의 납세자는 불리해짐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분리과세 국가와 종합과세 국가로 구분하여 세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세율 수준은 독일이 25%로 가장 높고 일본 15.315%, 한국 14%, 프랑스 12.8% 순임
 - 한국의 세율은 조사대상국 중 중간 수준이지만 독일, 일본, 프랑스는 한도 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한편, 한국은 2천만원 이하 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비교의 의미는 크지 않음²⁰⁹⁾
 -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의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미국이 37%로 가장 낮고 우리나라와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45%로 동일함

209) 실제 원천징수 세율은 한국은 지방세 1.4%가 추가된 15.4%이고 일본은 지방세 5%가 추가된 20.315%이며, 프랑스는 사회보장세가 추가된 30%임

- 영국은 저축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지만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함

□ 조사대상국 중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 필요경비 및 기타 명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일정 금액까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더불어 개인저축공제도 적용함
 - 0%의 세율은 저축소득 최대 5천파운드까지 적용하는데, 이 기준금액은 비저축 소득이 클수록 감소하여 비저축소득 금액이 1만 7,570파운드를 초과하면 기준 금액이 0이 되어 저축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부분이 사라짐
 - 비저축소득이 인적공제금액인 1만 2,57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파운드 당 기준금액이 1파운드씩 감소함
 - 비저축소득이 크지 않거나 저축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 혜택이 있는 공제라 할 수 있음
 - 개인저축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20%) 납세자는 1천파운드, 고세율(40%) 납세자는 500파운드의 공제가 적용되고 추가세율(45%) 납세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소득 수준이 클수록 공제혜택이 감소하는 구조임
- 독일은 자본소득에서 1천유로를 공제하는 저축자일괄공제를 운영함
 - 이는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로서 이자, 배당, 주식자본소득을 합한 자본소득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 미국은 투자소득에 관련된 이자비용을 항목별 공제 중 하나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순투자소득을 한도로 함
 - 투자소득에는 이자, 배당(적격배당 제외), 연금, 로열티 등이 포함됨

〈표 IV-1〉 주요국의 이자소득 과세제도

구분	대상	원천징수 여부	과세방식	세율	필요경비 및 기타 공제
한국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¹⁾	○	분리과세	14% ²⁾	없음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¹⁾	○	종합과세	6~45%	없음
미국	이자소득	×	종합과세	10~37%	이자비용 ³⁾
일본	예·저금 이자	○	분리과세	15.315% ⁴⁾	없음
	공사채 이자	○	분리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		
	동족회사 ⁵⁾ 가 발행한 사채 이자로, 그 동족회사 판정의 기초가 되는 주주 등이 받은 이자	○	종합과세	5~45%	없음
영국	이자소득	×	종합과세 성격을 갖는 분류과세 ⁶⁾	20, 40, 45%	0% 세율 적용: 최대 5천파운드 ⁷⁾ 개인저축 공제: 1천파운드, 500파운드 ⁸⁾
독일	이자소득	○	분리과세 (선택적 종합과세 ⁹⁾)	25% (0~45%)	저축자일괄공제 ¹⁰⁾ : 1천유로
프랑스	이자소득	○	분리과세 (선택적 종합과세)	12.8% ¹¹⁾ (0~45%)	없음

주: 1)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분리과세 대상소득 제외한 이자와 배당 합산하여 판단함

2) 이자소득세 14%에 이자소득세의 10%인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됨

3) 이자소득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 시 항목별공제의 하나로 투자소득 관련 이자비용을 순투자소득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4) 소득세 15%와 부흥특별소득세 0.315%에 주민세 5%를 합한 20.315%가 원천징수됨

5) 3명 이하의 주주(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임

6) 개인공제가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적용되며, 이자소득세율은 타 종합소득 수준과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됨

7) 비저축소득이 인적공제 금액(1만 2,570파운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파운드당 기준금액이 1파운드만큼 줄어들며, 비저축소득이 1만 7,570파운드에 도달하면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0이 됨

8)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기본세율(20%), 고세율(40%) 구간에 위치한 납세자의 경우 각각 1천 파운드, 500파운드의 개인저축공제가 적용됨

9)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율(25%)로 분리과세되나 개인의 한계세율이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10) 자본소득(이자, 배당, 주식자본이익)에서 저축자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11) 사회보장부담금 17.2%가 추가된 30%가 원천징수됨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 조사대상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보면, 영국을 제외한 5개 국가에서는 요건 또는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분류과세 단일 방식임
 -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은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함
 -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를 적용함
 -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함
 -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비교과세제도로 인해 세액산출과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 복잡한 구조임
 - 미국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에는 과세상 혜택이 있음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배당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0, 15, 20%)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배당은 일반소득세율(10~37%)로 종합과세함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통주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총 121일) 중 60일, 우선주는 배당락일 전후 90일(총 181일) 동안 90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 일본은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적용함
 - 상장주식(대주주 제외) 배당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분리과세(신고분리 또는 원천분리)를 선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상장주식 대주주 포함)은 종합과세만 적용됨
 -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율은 15.315%로 동일하나 차입금 이자를

공제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대주주 포함) 배당은 1종목에 연 10만엔 이하인 소액배당인 경우 원천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종합과세가 유리한 납세자의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독일의 경우 지분율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지분 1% 이상 보유하며 경영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의 경우 자본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서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영국은 배당소득세율이 다른 종합소득 수준과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종합과세 성격이 있지만²¹⁰⁾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20%, 40%, 45%)보다 낮은 세율(8.75%, 33.75%, 39.35%)을 적용하는 점에서 사실상 분류과세 방식임

- 조사대상국의 세율을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별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고자 함²¹¹⁾
 - 분리과세를 적용 시 세율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독일 25%, 일본 15.315%, 한국 14%, 프랑스 12.8%로 독일이 세율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가장 낮음
 - 한국의 세율은 중간 수준이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는 한도에 제한 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한국은 2천만원 이하 부분에 한해 적용하므로 비교가능성은 낮음
 -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최고세율이 미국(적격배당)은 20%, 영국은 39.5%로 영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미국은 일반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37%)이 적용되므로 두 국가의 전체적인 세율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은 장기보유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210) 영국은 소득을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구간을 결정한 뒤 각 소득에 별도의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세액을 산출함

211) 세율은 지방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세만으로 비교함

-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미국(일반배당)은 37%, 한국과 일본은 45%임
 - 일본과 한국은 최고세율이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일본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대주주로 제한적이거나 한국은 2천만원 초과로 소액주주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적용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음

- 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필요경비로 일부 비용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영국은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일본은 수입금액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며, 신고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적용 시 공제할 수 있음
 - 즉 상장주식 배당(대주주 제외)에서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와 비상장주식 배당(상장 대주주 포함)에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함
 - 미국은 배당소득 계산 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과세(일반배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항목별 공제의 하나로 관련 이자비용을 순투자소득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 이자비용은 해당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에 한함
 - 독일은 개인지분인 경우 1인당 1천유로의 공제를 적용하고 그 외 실제 발생 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용지분인 경우 실제 필요경비의 60%를 공제할 수 있음
 - 사업용지분의 경우 필요경비의 60%만 공제하는 것은 사업용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6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이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 1인당 1천유로의 저축자일괄공제는 이자, 배당, 주식자본이득을 합한 자본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표 IV-2〉 주요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대상	원천징수 여부	과세방식	세율	필요경비 및 기타공제
한국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¹⁾	○	분리과세	14%	없음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¹⁾	○	종합과세	6~45%	
미국	일반배당	×	종합과세	10~37%	이자비용 ⁴⁾
	적격배당 ²⁾	×	분류과세	0, 15, 20% ³⁾	없음
일본	상장주식 배당 ⁵⁾ (대주주 제외)	○	원칙: 종합과세 선택: 신고분리 또는 원천분리	15.315%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시 이자비용
	대주주 등 ⁶⁾ 이 받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배당	○	종합과세 (예외: 소액배당은 원천분리 선택)	5~45%	이자비용
영국	배당소득	×	분류과세	8.75, 33.76, 39.35%	없음
독일	개인 지분	○	분리과세 (선택적 종합과세 ⁷⁾)	25% (0~45%)	1천유로 ⁸⁾
	사업용 지분에서 받은 배당 ⁹⁾	○	선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	0~45%	실제 필요경비의 60%
프랑스	배당소득	○	분리과세 (선택적 종합과세)	12.8% (0~45%)	없음

주: 1)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분리과세 대상소득 제외한 이자와 배당 합산하여 판단함

2) 적격배당은 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보유기간 요건은 보통주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총 121일) 중 60일, 우선주는 배당락일 전후 90일(총 181일) 동안 90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임

3) 자본이득세율과 동일함

4) 배당소득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배당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항목별 공제의 하나로 이자비용을 순투자소득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5)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도 포함

6) 대주주 등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상당하는 수 또는 금액의 주식 등을 보유한 개인임

7)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율(25%)로 분리과세되나 개인의 한계세율이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8) 자본소득(이자, 배당, 주식자본이득)에서 저축자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9) 투자자가 지급법인의 ①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② 지분 1% 이상 보유하며 회사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투자자가 받는 배당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이중과세 조정제도

- 개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나 분리과세 적용 시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은 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반배당과 독일의 개인지분은 종합과세 적용 시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음
 - 미국의 적격배당과 영국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정함

- 조정방식 유형을 분류해 보면 한국은 임퓨테이션 방식, 독일과 프랑스는 소득공제 방식, 일본은 세액공제 방식이며, 미국과 영국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임퓨테이션 방식이란 수취한 배당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며, 현재 법인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이나 9%의 낮은 세율로 조정하므로 부분 임퓨테이션이라고도 함
 - 계산이 복잡하고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조정하므로 부분적으로만 조정됨
 - 독일, 프랑스는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독일에서 사업용 지분으로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프랑스에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40%를 공제함
 - 일본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정하는데, 총과세소득 규모와 배당 유형(배당금 및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임
 - 과세총소득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 배당금은 10%,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5%(외화표시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2.5%)의 공제율 적용함
 - 과세총소득이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소득 내에서 배당금과 증권투자신탁 분배금 규모에 따라 배당금은 10% 또는 5%,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5% 또는 2.5%(외화표시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2.5% 또는 1.25%)의 공제율을 적용함
 - 미국과 영국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중과세 문제 때문이므로 일종의 이중과세

조정이라 할 수 있음

- 영국은 저율과세 외에도 500파운드의 정액을 공제하고 있음
- 영국은 임퓨테이션 방식에서 저율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배당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도입 당시 공제액은 1만파운드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500파운드로 감액되었음

〈표 IV-3〉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구분	배당소득 과세방식		이중과세 조정제도	
			조정방식	이중과세 조정금액
한국	분리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종합과세		임퓨테이션	- 귀속법인세: 배당소득 × 10% ¹⁾ - 공제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비교산출세액 ²⁾
미국	분류과세		저율과세(장기자본이득세율 적용) ³⁾	해당 없음
	종합과세		조정 없음	
일본	분리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종합과세		배당세액공제 ⁴⁾	
영국	분류과세		저율과세 (별도의 누진세율 적용)와 배당공제	500파운드 공제 ⁶⁾
독일	개인 지분	분리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종합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사업용 지분 ⁷⁾	종합과세	소득공제	배당소득의 40% 소득공제
프랑스	분리과세		조정 없음	해당 없음
	종합과세		소득공제	배당소득의 40% 소득공제

〈표 Ⅳ-3〉의 계속

배당소득 과세방식	이중과세 조정제도	
	조정방식	이중과세 조정금액

- 주: 1) 배당가산율 = (법인세율 / (1 - 법인세율)) = (0.09 / (1 - 0.09)) ≃ 0.1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 14%
 3) 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배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일본 국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금전의 분배,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 등으로, 확정신고에 있어서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은 배당소득에 한정함
 5) 외화표시증권투자신탁의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2.5%, 1.25% 적용함
 6) 배당공제액은 2023년 4월 6일 이전에는 2천파운드, 2024년 4월 6일 이전에는 1천파운드, 2024년 4월 7일 이후는 500파운드로 점차 감소되었음
 7)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지분 1% 이상 보유하며 회사의 경제활동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투자자를 의미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가입자가 계좌 내 납입금액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임
- 조사국 6개국 중 금융소득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4개국임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본은 신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영국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프랑스는 PEA(Plan d'Epargne en Actions)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독일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미국은 적격 배당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²¹²⁾로 과세하며, 목적별 세제우대계좌(은퇴, 건강, 교육 등)가 이미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음
- 독일은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²¹³⁾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해당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개인별 1천유로의 저축자일괄공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별도의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다음의 내용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비교분석한 것임

가. 계좌유형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조사국별 해당 계좌의 유형이 상이한데, 한국은 운용방식에 따라 영국은 정책목적 및 편입가능 자산에 따라 프랑스는 운용방식 및 편입가능 자산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한국은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지시에 따라 맞춤형 상품에 투자하는 신탁형 ISA, 투자방식을 일임업자(금융업자)에게 위임하여 투자하는 일임형 ISA, 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중개형 ISA로 구분됨
 - 일본은 과거 납입방법과 편입가능자산에 따라 일반형·적립형 NISA로 구분했으나 2024년 이후 계좌구분 없이 교차투자가 가능한 신NISA로 통합하여 운영함
 - 영국은 정책목적에 따라 저축 및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한 예금형, 증권형, 혁신금융형 ISA와 생애첫주택 및 은퇴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LISA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금형, 증권형, 혁신금융형 ISA는 편입가능 자산이 서로 상이함
 - 편입가능 자산은 예금형의 경우 은행 등의 저축상품, 증권형은 주식·펀드·회사채·국채 등의 전통적인 증권형 상품, 혁신금융형은 PTP 대출, 클라우드펀딩 채권 등

212) 일반소득세율은 10~37%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적격배당에 대하여는 0~20% 누진세율을 적용함

213)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핀테크 투자 상품임

- LISA는 예금형, 증권형 ISA계좌에서 편입 가능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프랑스는 편입가능 자산에 따라 EU 및 EEA 기업 내 주식·펀드 등에 비교적 광범위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PEA, 중소기업이 발행한 투자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PEA-PME계좌로 나뉨
 - PEA는 다시 투자자가 직접 개별 상품에 투자하는 은행형 PEA,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보험형 PEA로 나뉨
-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일본, 영국은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며, 일본, 프랑스는 예금형 상품투자를 허용하지 않음
 - 프랑스는 EEA 내 기업의 해외주식에 직접투자는 허용하나 미국 및 영국 등 비 EEA 내 해외주식 투자가 제한되며, 한국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불가능함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등으로 간접투자는 가능함²¹⁴⁾
 - 한국, 영국은 예·적금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나 일본, 프랑스는 허용하지 않음
 - 한국은 신탁형, 일임형 ISA계좌, 영국은 예금형 ISA계좌를 통해 투자 가능함
- 이 외에도 영국,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운영하며, 해당 계좌의 경우 납입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제한적임
 - 영국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법정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명의로 자녀형 ISA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한도는 9천파운드(일반은 연 2만파운드)임
 - 프랑스는 거주자의 자녀 또한 2만유로/5년(일반 납입한도 15만유로/5년) 내 PEA 계좌 개설이 가능함
 - 일본의 경우 주니어NISA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이용률 저조로 2023년을 끝으로 가입이 종료됨

214) 프랑스의 경우 EEA 내 주식에 75% 이상 투자하는 ETF로 한정함

〈표 IV-4〉 주요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구분 방법	운용방식	-	정책목적 및 편입가능 자산	운용방식 및 편입가능 자산
성인	① 신탁형 ISA ② 일임형 ISA ③ 투자중개형 ISA	신NISA	① 예금형 ISA ② 증권형 ISA ③ 혁신금융형 ISA ④ LISA	PEA(① 은행형, ② 보험형) ③ PEA-PME
자녀	-	-	자녀형 ISA	PEA(자녀한도)

주: 1. '-'는 없음을 의미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가입요건

- 일본, 영국, 프랑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요건을 세법상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한국의 경우 이와 별도로 소득제한을 두고 있음
- 한국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는 만 1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함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됨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됨
- 일본, 영국, 프랑스는 만 18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계좌발급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 영국의 경우 출생연도가 2006. 4. 6.~2008. 4. 5.에 해당하는 경우²¹⁵⁾ 현금형 ISA계좌(1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두며, LISA(Lifetime ISA)²¹⁶⁾의 경우 추가로 40세 미만 요건을 두고 있음

215) 2024년 현금형 ISA계좌의 발급요건 연령이 만 16세→18세로 변경된 조치에 대한 경과규정임

216) 생애첫주택 구입 및 은퇴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ISA계좌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부보조금 혜택이 주어짐

다. 복수계좌 허용 여부

-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한국, 일본에서는 동일 과세연도 내 복수의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납입할 수 없음
 - 복수계좌 허용 여부란 동일 과세기간 동안 여러 유형의 계좌를 소유하거나 계좌 유형에 상관없이 다수의 계좌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함
 - 영국은 LISA, 자녀형 ISA를 제외하고 복수의 예금형·증권형·혁신금융형 ISA계좌에 연간 납입한도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
 - 프랑스는 거주자 1인당 각각 1개의 PEA, PEA-PME계좌에 연간 납입한도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
 - 한국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계좌 운용 허용 방안이 논의된 바는 있으나, 현재는 1인 1계좌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 가능함
 - 단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유형별 계좌 이전이 가능함²¹⁷⁾
 - 일본은 단일 유형의 통합계좌만 운영하며, 동일 과세기간 내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됨

라. 의무기간

- 일본, 영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을 두지 않으나, 한국, 프랑스는 각각 3년,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있음
 - 일본, 영국은 의무가입기간을 두지않고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좌 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본은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과세기간을 5년 한도로 제한함
 - 단 영국의 LISA의 경우 생애첫주택 구입 및 은퇴자금 목적이 아닌 이유로 중도

217) 해당 절차를 통해 ISA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되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자산을 환매하여 현금화한 후 계좌 이전함)

인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혜택(25%)만큼 수수료가 부과됨

- 한국은 세제혜택을 위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의무가입기간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함
- 프랑스는 최소 5년 이상의 계좌 의무가입기간을 만족하여야 하며, 계좌 내 자금의 중도인출 시 계좌해지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마. 세제혜택

- 한국을 제외한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납입한도 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한하지 않고 비과세하나,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200만원, 서민·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제한을 두고 비과세함
 - 한국의 경우 비과세 한도초과분은 9%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함
- 국가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규모는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의 납입한도는 프랑스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²¹⁸⁾
 - 프랑스는 PEA, PEA-PME계좌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 5년간 최대 납입한도가 22만 5천유로이며, PEA계좌만 운영하는 경우 5년간 최대 15만유로임
 - 영국은 연간 총 2만파운드까지 ISA계좌에 납입이 가능하며, 과세연도 내 중도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한해 재납입도 가능함
 - 일본은 연간 360만엔 한도, 총 한도 1,800만엔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미납입분의 이월은 불가능하나 중도인출로 인한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음
 - 한국은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총 한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도 가능하나 중도인출로 인한 납입한도 복구는 허용하지 않음
- 이상의 국가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용을 종합하면 <표 IV-5>와 같음

218) 프랑스의 경우 납입한도(5년간)에 의무가입기간(5년)을 나누어 1년간 4만 5천유로로 간주하여 비교함

〈표 Ⅳ-5〉 주요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성인대상)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가입요건	성인 ¹⁾ (만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성인 (만 18세 이상)	성인 ⁵⁾ (만 18세 이상)	성인 ⁷⁾ (만 18세 이상)
의무가입 기간	3년 (중도인출 가능)	없음 ³⁾ (중도인출 가능)	없음 ⁶⁾ (중도인출 가능)	5년 (중도인출 불가능)
납입한도	2,000만원/1년 ²⁾	360만엔/1년 ⁴⁾ (최대 1,800만엔)	20,000파운드/1년	220,000유로/5년 ⁸⁾
		약 3,383만원/1년 (최대 1억 6,920만원)	약 3,757만원/1년	약 3억 5,665만원/5년
과세혜택	순이익의 200만원 (서민·농어민의 경우 400만원)한도로 초과 세, 한도초과분은 저율 (9%) 분리과세	납입한도 내 적격투 자에서 발생한 배당 금 및 양도차익 등 에 대하여 비과세	납입한도 내 적격투 자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자본이득에 대 하여 소득세 비과세	납입한도 내 적격투 자에서 발생한 자본 소득 ⁹⁾ 에 대하여 소 득세(12.8%) 비과세
편입가능 상품	예적금, 국내주식 및 펀드, ETF, ETN, 리츠, 채권, 펀드, RP, ELS 등	투자신탁, 국내 및 해 외 상장주식, ETF, 공모주식투신, REIT 등	예적금, 상장주식, 펀 드(주식/채권), ETF, OEIC, 유닛트러스트, PTP loans, 클라우드 드펀딩 채권 등	EU 및 EEA 내 상장 주식, 일부 비상장주 식, 투자증서, 지분, 자본증권, 혁신펀드 등

주: 1.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고려한 것임
 2. 일본, 영국, 프랑스의 한국통화 환산 납입한도는 2025. 8. 18. 기준의 은행 고시환율을 기준으
 로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1) 15세 이상인 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포함
 2)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021년부터)
 3) 의무가입기간은 없으나 비과세 기간을 5년 한도로 함
 4) 연간 적립투자 120만엔, 성장투자 240만엔 총 360만엔을 한도로 함. 적립투자, 성장투자 간
 차이는 투자위험성에 대한 차이이며, 적립투자는 성장투자와 비교해 투자 리스크가 낮은 상품
 임. 성장투자 총 납입한도는 1,200만엔임
 5)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명으
 로 자녀형 ISA계좌(한도: 9천파운드)를 개설할 수 있음
 6) 단 LISA의 경우 생애첫주택, 은퇴자금 마련(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이 지급됨)이 아닌 목적으로
 계좌를 해지(또는 중도인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25%)만큼의 인출수수료가 부과됨
 7) 자격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자녀 또한 특별한도(2만유로) 내 개인저축계좌(PEA) 가입이 가능함
 8) 중소기업 투자 장려를 위한 PEA-PME계좌 경우이며, 일반 PEA계좌의 경우 15만유로임
 9)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을 말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V. 시사점 및 결론

1. 금융소득 과세제도

-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가계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자본시장을 정상화 시킴으로써 가계자산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건부 종합과세로 인한 형평성 문제, 비교과세로 인한 세액산출과정의 복잡성 문제,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저해,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복잡하면서 이중과세 조정이 미흡한 문제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과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조정, 조건부 종합과세방식 개선, 필요경비 인정, 이중과세조정 방식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배당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가. 단기적 개선방안

1) 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과 관련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²¹⁹⁾

-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는 기준금액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어 물가상승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임²²⁰⁾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을 보면 현재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13.7만명에서 2016년 9.4만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는 점차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3.6만명으로 전년 대비 75.6%(14만명) 증가하였음²²¹⁾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고금리 상황과 주식투자자 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 취지는 고액의 금융소득자를 대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으나, 현재는 중산층 또는 일시소득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음²²²⁾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종합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세수에 큰 영향이 없으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행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부동산으로 자산이 이동하거나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한 비과세 상품으로의 조세회피 유인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상승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조세회피 유인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조정하다고 가정할 때 2023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중 4천만원 이하 신고자 수는 전체 신고자의 58.2%에 달하지만 해당 구간

219) 매일경제, 「“이자·배당 늘어도 절반 뜯긴다”…28년째 묶인 기준에 세금 부담 늘어», 2024. 5. 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2291>, 검색일자: 2025. 9. 15.

220) 매일경제, 「투자 잘한 죄…'중산층 족쇄' 금소세», 2024. 5. 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2248>, 검색일자: 2025. 9. 15.; 매일경제,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10년 체자리 과세기준에 중산층으로 번진 금소세», 2025. 2. 2., <https://www.mk.co.kr/news/economy/11230560>, 검색일자: 2025. 9. 15.

22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5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각 연도.

222) 『매일경제』,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2024. 5. 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2281>, 검색일자: 2025. 8. 23.

납세자의 금융소득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16.4%에 불과함

- 한편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²²³⁾
 - 이는 고액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조세형평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확대로 금융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조정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정책 목적에 따라 경제적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사대상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는 없어 해외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움

2) 조건부 종합과세방식 개선

- 현재의 조건부 종합과세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면이 있음
 - 낮은 금융소득자들에게는 분리과세만 인정하므로,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높아 소득유형 간 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
 - 조사대상국 중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혼합 적용하는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²²⁴⁾의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조건에 따라 2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분리과세만 적용함

223) 이상엽·윤성만(2016), p. 11.

224) 미국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혼합 적용하고, 영국은 분류과세만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이자는 분리과세이고 대주주 등을 제외한 배당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즉 금융소득만 2천만원 있는 납세자는 14%의 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소득)만 2천만원 있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큼
- 또한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세액산출 과정이 복잡하고 다른 종합소득 대상자에 비해 중과하는 측면이 있음
 - 비교과세제도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각각의 세액을 산출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하더라도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임
 -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이런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됨
-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닌 선택적 종합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비교과세제도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종합과세 적용 시에도 비교산출세액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도 제고하면서 세제가 간소화될 수 있음
- 과거 조건부종합과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만 적용받는 자들이 기준금액²²⁵⁾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만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성을 제기하였으나 합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²²⁶⁾ 해당 사례가 현재에도 유효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판단의 근거는 금융소득자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225) 판결당시는 기준금액이 4천만원이었음

226)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 489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울러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및 금융권의 혼란 등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한편 해당 판결이 나온 지 20여 년이 경과한 만큼 전산화로 인해 행정적 부담은 판결 당시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선택적용으로 인한 납세자의 실익과 조세징수비용의 증가 등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3) 필요경비 인정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에 비해, 금융소득은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순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비해 실질 세부담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행정적으로 비용공제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 금액의 비용 공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는 다른 소득(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배당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 관련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독일은 정액으로 1천유로를 공제함

- 특히 독일은 금융기관에 저축자일괄공제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공제금액 한도만큼 원천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분리과세제도에서도 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자소득의 본질상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상정하기 어렵고 소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이라 결정한 사례가 있음

- 이자소득의 본질상 필요경비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행위로서 타인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배당소득을 고려한다면 필요경비를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음
- 소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증빙을 통한 공제가 아닌 독일과 같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자비용 공제를 활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이나 차입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역진적이 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모든 국가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임

4) 이중과세조정 방식 개선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방식은 조사대상국에 비해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중과세 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취배당액에 배당가산율을 적용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출한 후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데, 이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을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구조임
 - 또한 귀속법인세를 산출하는 데에 법인세의 낮은 세율을 기초로 하여, 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지급배당에 대해서는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이중과세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한 반면 이중과세는 완전히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임퓨테이션 방식에서 현재는 저율과세 또는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큼²²⁷⁾
 - 저율의 분류과세를 하는 미국과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독일, 프랑스의 경우 배당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은 하지 않음

- 우리나라와 같이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 장기적 개선방안

- 배당소득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닌 배당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하거나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배당 과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원천이 동일하며 배당정책에 의해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은 소득이므로 두 소득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면 형평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²²⁸⁾
- 모든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고 조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조사대상국 중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만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그 이유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종합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기보유 주식에서 받는 일반배당에 한해 종합과세를 적용함
 -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227) 영국은 1999년, 독일은 2001년, 프랑스는 2005년, 아일랜드 1999년, 이탈리아 2004년, 핀란드 2005년, 노르웨이 2006년에 임퓨테이션 제도를 폐지하였음

228) 김문정·이형민·김수린(2024), p. 153.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현재와 같이 임퓨테이션 방식을 적용한다면, 복잡한 계산과정과 미흡한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중과세조정방식의 개선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미국(적격배당)과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나치게 복잡한 이중과세조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일반소득 세율보다는 약하지만 누진적 세율구조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미국은 장기보유 주식에 한해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음
 - 저율의 세율을 적용할 때 최고세율은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배당과 주식 양도차익은 주식이라는 공통된 자본을 보유 시 과세하거나 양도 시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중립적인 세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독일, 프랑스와 같이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종합과세를 선택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절차가 간편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분리과세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자가 불리해지는 문제는 선택적 종합과세로 보완할 수 있음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실제 세부담은 원천징수세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프랑스에서 적용하는 원천징수 면제제도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세수감소 문제이나, 이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세제의 투명성 제고로 인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배당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
 -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과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였으나 자본이탈 방지 및 세제단순화를 위해 현재의 분리과세방식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복잡한

과세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프랑스는 당시 높은 세율로 인한 자본유출과 세원 잠식 우려가 있었고 투자 친화적 국가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단일세율의 분리과세 제도로 개정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변화는 세입 및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배당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류 또는 분리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주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주식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이 좀 더 성숙된 후 주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정상화가 필요함
- 또한 주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인상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일부 충당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민 자산형성 및 투자장려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국제비교 결과 한국 ISA제도의 몇몇 요건이 정책목적을 제한하는 면이 있음

□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ISA 가입요건, 세제혜택, 운용방식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가. 가입요건

- 일본, 영국, 프랑스는 국민 자산형성 및 투자장려 목적에 알맞게 가입요건을 성인 거주자로만 한정하나 한국은 이와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계좌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일본, 영국, 프랑스는 성인 거주자면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이 허용되나 조사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ISA계좌 발급이 제한됨

- 최근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더 지워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종합과세기준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 중산층에 세부담을 가중하고 이들의 자산형성 및 투자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영국, 프랑스의 경우 거주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을 제공하여 생애주기별로 폭넓게 ISA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한국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ISA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방법과 둘째,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한국은 ISA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입요건을 완화해 온 바 있음
 - 도입 초 가입대상은 '당해 또는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이었으나, 현행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임²²⁹⁾

- 최근 가입요건과 관련하여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 단 납입한도 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하는 방안임
- 그러나 위와 같이 이중적 제한규정(가입대상 + 소득요건 제한)은 제도의 복잡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 및 금융 기관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가입요건으로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주요국과 같이 '성인 거주자'로만 한정한다면 국민 자산형성 및 투자장려를 위한 보편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영국, 프랑스와 같이 자녀에 대한 특별한도는 생애주기별 세제혜택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미성년까지 자본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나. 세제혜택

- 일본, 영국, 프랑스는 납입한도 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제한하지 않고 비과세하나, 한국의 경우 제한을 두고 비과세하며 연간 납입한도 규모는 조사국 중 가장 낮음
 - 일본, 영국, 프랑스는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도 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²³⁰⁾²³¹⁾
 - 프랑스: 약 7,133만원/1년²³²⁾(약 3억 5,665만원/5년)

229)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 19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함

230) 일본, 영국, 한국의 경우 납입한도 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본, 영국의 경우 중도인출로 인한 납입한도 복구도 가능함

231) 다음 납입한도는 2025. 8. 18. 환율 기준으로 한국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 영국: 약 3,757만원/1년
 - 일본: 약 3,383만원/1년(총 1억 6,920만원)
 - 연간 납입한도 규모는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순이며, 한국의 납입한도는 프랑스의 27%, 영국의 53%, 일본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임
 - 한국: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 최대 400만원 한도²³³⁾
 - 단 일본, 영국,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납입한도 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므로 단순히 납입한도 규모만 비교하는 것은 해석의 주의를 요함
- 한국의 세제혜택에 대한 이중적 제한규정(납입한도 + 비과세 한도)은 재정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나, 과세관청 관점에서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납세한도 및 투자수익을 이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점도 있음
- 현행 비과세 한도 규정으로 인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부터 한계세율이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수익 및 장기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 투자자가 납세한도 및 투자수익을 이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수익이 한도에 근접하는 경우 투자자의 중립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같이 연간 납입한도 규정만 적용하되 대상별(일반, 서민·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납입한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납입한도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재정비용을 관리하고, 비과세 한도 규정을 폐지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음
 - 주요국의 경우 대상별 차등없이 연간 납입한도를 부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
-
- 232) 프랑스는 5년간 납입한도를 제한하는 구조이며, 해당 값은 납입한도를 5년으로 나누어 1년으로 환산한 금액임
- 233) 일반적인 경우 200만원, 서민·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함. 비과세 한도를 초과분에 대하여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함

행제도에 대상별(일반, 서민·농어민) 비과세 한도가 차등으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비용 관리를 위하여 납입한도를 대상별로 차등부여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 운영방식

- 일본, 영국, 프랑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복수계좌 발급 허용 또는 통합한도 운영 등의 내용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정한 바 있음
 - 일본은 2024년부터 연간 통합한도가 부여되는 신NISA제도로 통합·개편됨
 - 기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 NISA는 과세기간 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계좌 간 교차투자가 불가능하였음
 - 통합·개편 후 연간 납입한도를 비교적²³⁴⁾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합계좌에서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투자자 편의성도 제고됨
 - 영국은 2016년 ISA계좌 간 납입한도 이전을 허용(단 1유형 1계좌 원칙)하였고, 2024년부터 동일 유형 간 복수계좌 발급을 허용하여 투자자가 납입한도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LISA 및 자녀형 ISA계좌를 제외한 예금형·증권형·혁신금융형 ISA계좌에 한함
 - 프랑스는 유형별(PEA, PEA-PME) 각각 1계좌 원칙을 고수하나 이들 계좌에 통합한도²³⁵⁾를 운영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함
- 한국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바 있으나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 2016년 투자자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계 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및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34) 단 통합계좌 내 구분(적립형 또는 성장형)에 따라 납입한도가 차등적으로 부여됨

235) 납입한도는 PEA계좌의 경우 15만유로/5년, PEA-PME계좌의 경우 22만 5천유로 한도이며, 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통합납입한도는 22만 5천유로임

- 단 변경을 위하여 계좌 내 자산을 환매하여 현금화한 후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의무가입기간 내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투자자는 가입시기에 선택한 유형의 ISA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등의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사국과 비교하여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① 통합계좌를 활용하거나, 영국, 프랑스와 같이 ② 복수계좌 + 통합상한을 병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일본의 통합계좌 방식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일임형·신탁형·투자증개형 계좌를 하나로 묶어 통합한도로 관리하며, 정책목적에 따라 일임형·신탁형·투자증개형 내 한도를 제한할 수도 있음
- 영국, 프랑스와 같이 복수계좌 + 통합상한을 병행한다면 정책 목적에 따라 일임형·신탁형·투자증개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수계좌를 허용하고, 통합 상한 내 자유 배분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두 방안 모두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 예로 2024년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계좌가 논의된 바 있는데, 이처럼 정책적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 후자의 방법 모두 용이하게 이를 반영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1. 2.
- _____,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 1. 1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금융위원회, 「ISA 오늘부터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상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6. 7. 18.
- _____,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보도자료, 2021. 7. 23.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4. 12. 10.
- _____,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 7. 31.
- _____,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보도자료, 2024. 1. 31.
- _____,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_____, 『조세개요』, 각 연도.
- 김문정·이형민·김수린,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세법연구 24-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김보영, 「한국과 일본의 ISA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4.
- 『매일경제』,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2024. 5. 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2281>, 검색일자: 2025. 8. 23.
- _____, 「“이자·배당 늘어도 절반 뜯긴다”…28년째 묶인 기준에 세금 부담 늘어」, 2024. 5. 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2291>, 검색일자: 2025. 9. 15.

- _____, 「투자 잘한 죄…‘중산층 족쇄’ 금소세», 2024. 5. 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2248>, 검색일자: 2025. 9. 15.
- _____,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10년 제자리 과세기준에 중산층으로 번진 금소세», 2025. 2. 2., <https://www.mk.co.kr/news/economy/11230560>, 검색일자: 2025. 9. 15.
- 문성훈,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14권 제2호, 2021, pp. 41~80.
- 오윤·임동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2013, pp. 63~92.
- 유관기관합동,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26.
- 이병관, 「일본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책 주요내용」,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24.
- 이상엽·윤성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16-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이승주,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국회도서관, 2024.
- 이한솔·양미선·이옥녕·김강훈, 『2024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국세청, 2025. 4.
-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 세법연구 2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정원석·마지혜,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kiri리포트』, 2017. 4. 3.
- 정인, 『영국의 ISA 확장과 라이프타임 ISA 도입』,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 9. 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3.
- _____,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3.
- 『한국경제』, 「ISA,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2019. 7. 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71053901>, 검색일자: 2025. 6. 18.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 489 결정.
- 홍범교·구문정·홍성희,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6-05, 2016.

〈외국 문헌〉

寺崎寛之, 『図説 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23.

日本証券業協会, 「NISA口座の開設・利用状況 (2025年3月末時点)」, 2025.

AJBell, “ISAs unpacked: who holds them and how much do they have?,” March 19, 2025, <https://www.ajbell.co.uk/group/news/isas-unpacked-who-holds-them-and-how-much-do-they-have> (accessed 8 August 2025)

Financial Times, “What the chancellor’s financial reforms mean for your money,” July 19, 2025, <https://www.ft.com/content/d13b36b7-d48b-4426-9cc3-617bd3ffb919> (accessed 8 August 2025)

MoneySavingExpert, “Martin Lewis: ‘The government has finally listened’ as Cash ISA limit cut reportedly put on hold,” July 11, 2025, <https://www.moneysavingexpert.com/news/2025/07/cash-isa-limit-cut-martin-lewis/> (accessed 8 August 2025)

MONEYWEEK, “‘Reeves should cut cash ISA limit and revive Brit ISA,’ says Merryn Somerset Webb,” July 23, 2025, <https://moneyweek.com/personal-finance/cash-isas/cash-isa-limit-brit-stocks-isas> (accessed 8 August 2025)

IMF, “France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7/289, 2017.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24.

Parliamentary Office and House of Lords Economic Affairs Committee, “Chapter 3: Reforming Dividend Taxation (HL Paper 108),” 201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516/ldselect/ldeconaf/108/10806.htm> (accessed 30 July 2025)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ISA 다모아」,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

jsp?w2xPath=/wq/main/main.xml#!
독일연방법률서비스포털, <https://www.gesetze-im-internet.de>
미국 국세청(IRS), <https://www.irs.gov>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일본 SBI증권, <https://www.sbisec.co.jp>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프랑스 국세청, <https://bofip.impots.gouv.fr>
프랑스 중앙은행, <https://www.banque-france.fr/fr>
프랑스법률서비스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69577?etatTexte=VIGUEUR&etatTexte=VIGUEUR_DIFF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ニッセイ基礎研究所, <https://www.nli-research.co.jp>
AJBell, <https://www.ajbell.co.uk>
Daiwa Securities, <https://daiwa.dga.jp>
deloitte, <https://www.deloitte-tax-news.de>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
finanztip, <https://www.finanztip.de>
French-Property, <https://www.french-property.com>
Haufe Online Redaktion, <https://www.haufe.de/steuern>
IBFD, <https://research.ibfd.org>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
Lui Président, <https://www.luipresident.fr>
Money Forward, <https://biz.moneyforward.com>
MoneySavingExpert, <https://www.moneysavingexpert.com>
MONEYWEEK, <https://moneyweek.com>
NISA, <https://www.fsa.go.jp>

pwc,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세법연구 25-01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발행 2025년 9월 30일
저자 홍병진·송은주·노수경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ISBN 979-11-6655-368-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